

〈논문〉

프랑스민법상 자동차질권의 설정과 실행* - 우리나라의 자동차인도명령제도에 대한 시사점 -

南 孝 淳**

요 약

프랑스에서 자동차에 대하여는 질권이 설정된다. 자동차질권은 특별법의 규율을 받아오다가 2006년 3월 23일자 오르도낭스에 의하여 담보법이 개혁될 때 프랑스민법전이 이를 규율하게 되었다. 프랑스민법전상 자동차질권은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자동차는 점유가 아니라 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통하여 공시되는 자동차등록질권이 인정된다. 등록은 자동차등록질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이다. 그런데 등록이 실행되더라도 질권자는 자동차를 실제적으로 점유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민법전은 자동차등록질권자가 행정관청에 질권신고를 하고 신고수리증을 교부받을 경우 질권자에게 점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의제점유이다. 따라서 점유가 인정되는 이상 자동차등록질권자에게 유치권도 인정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유치권은 소유자 이외에 실제로 자동차를 점유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점유자와의 관계에서는 점유자의 유치권만 인정되고 자동차등록질권자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자동차의 경우 등록이 질권의 대항요건이므로 제3자는 소유권의 선의 취득도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프랑스의 민사집행절차법전은 질권의 경우 담보물권 일반과 마찬가지로 질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매매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권도 일반의 절차에 따라야 강제매각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민사집행절차법전의 경우 동산에 대하여는 일반강제집행 절차의 경우와 달리 임의매각이 먼저 실시된다. 부동산의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임의매각이 진행되지만, 동산의 경우 임의매각이 먼저 실행되고, 임의매각이 실행될 수 없는 경우에만 강제매각이 실행된다. 한편 프랑스에서 자동차등록질권은 절차법적으로도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민사집행절차법전은 자동차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에 의한 압류(la saisie par déclaration auprès de l’autorité administrative)’와 ‘자동차의 바퀴잠금에 의한 압류(la saisie par immobilisation du véhicule)’라는 특별 압류절차를 인정한다. 이러한 특별 압류절차가 마련된 이유는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15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이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자동차는 이동성으로 인하여 은닉이 아주 쉬워 압류를 쉽게 회피할 수 있고, 많은 경우 자동차가 신용구매나 담보물권의 대상이 되어 자금의 대출기관인 금융기관에 의하여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고 또 점유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방법이 필요하게 되어 신고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압류절차와 자동차의 바퀴에 잠금장치를 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점유를 확보하는 압류절차가 인정된 것이다. 특히 ‘자동차의 바퀴잠금에 의한 압류’는 일반 매각절차 중에 실시되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서 독자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주제어: 자동차등록질권, 비점유질, 자동차등록증, 의제적 점유, 의제적 점유에 의한 유치권, 질권의 실행, 압류 및 매각의 절차,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에 의한 압류(신고압류), 자동차의 바퀴잠금압류

I. 서 론

프랑스민법전 제4권 제2편 제2부편은 동산담보물권을 규정하고, 제2부편 제2장은 유체동산질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유체동산의 질권에 관한 제2장은 다시 제1절(제2330조 내지 제2350조)에서 질권 일반에 대하여 규율하고 이어서 제2절(제2351조 내지 제2353조)에서 자동차에 대한 질권(Du gage portant sur un véhicule automobile)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그 동안 자동차의 질권에 대하여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를 자동차등록질권으로 규율하다가, 2006년 3월 23일자 오르도낭스에 의하여 프랑스민법전의 담보제도(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를 개혁하면서 프랑스민법전이 비로소 이를 규율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다. 한편 자동차에 대한 집행절차는 민사집행절차법전에 의하여도 역시 특별한 취급을 받고 있다. 즉, 프랑스의 민사집행절차법전은 유체동산에 대한 질권 일반의 실행에 대한 집행절차를 규율하면서 동시에 자동차등록질권의 실행에 대하여도 특별한 집행절차를 두고 있는 것이다. 특별한 집행절차란 바로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에 의한 압류(la saisie par déclaration auprès de l’autorité administrative)’(이하 ‘신고압류’라 부른다)와 ‘자동차의 바퀴잠금에 의한 압류(la saisie par immobilisation du véhicule)’(이하 ‘바퀴잠금압류’라 부른다)이다.¹⁾ 프랑스의 경우에도 자동차의 이동 또는 은닉이 용이하

1) ‘saisie par immobilisation du véhicule’ 중의 ‘immobilisation’을 어떻게 번역할지가 문제

여 점유확보가 실행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압류절차가 바로 ‘바퀴잠금에 의한 압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는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경우와는 달리 질권의 객체가 아니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그런데 일반 부동산저당권의 집행절차의 경우는 등기부 기재로 충분하지만, 자동차저당권의 경우에는 등록부 기재 이외에 압류표지의 부착을 위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점유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 민사집행법은 자동차인도명령제도(민사집행규칙 제113조)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의 이동 또는 은닉이 용이한 상태에서는 자동차인도명령은 그 실효성을 갖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자동차의 특별 압류절차인 바퀴잠금압류절차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프랑스민법전의 자동차등록질권(II)에 대하여 살펴본 후에, 민사집행절차법전의 자동차등록질권의 실행절차(III)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바퀴잠금압류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프랑스민법전의 자동차등록질권

자동차등록질권이 특별법이 아닌 프랑스민법전에 의하여 규율이 된 것은 2006년 3월 23일자 오르도낭스에 의하여 담보물권법이 개혁되면서이다. 프랑스민법전은 질권과 관련하여 점유질(*gage avec possession*)과 함께 비점유질(*gage avec dépossession*)을 인정하게 되었다.²⁾

이다. ‘immobilisation’은 자동차의 이동 또는 은닉할 수 없도록 자동차바퀴에 족쇄를 채우는 잠금장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immobilisation’은 고정, 이동금지 또는 이동불능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고정이라는 용어는 어느 곳에 고정시킨다는 의미가 있고, 이동금지란 자동차점유자에 대한 용어로서의 의미가 있고 또 이동불능이란 고장이 난 상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immobilisation’을 ‘바퀴잠금’ 또는 ‘잠금’으로 의역을 하여, ‘saisie par immobilisation du véhicule’은 ‘바퀴잠금압류’로 ‘잠금압류’로 번역하기로 한다.

- 2) 2006년 3월 23일자 오르도낭스에 의한 프랑스민법전의 담보물제도 개혁의 중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성수, “프랑스 민법전의 독립적 채무보증(*garantie autonome*)에 관한 연구 - 개정 담보법(2006)의 내용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제49-2호(한국민사법학회, 2010), pp. 81-144; 남궁술, “프랑스민법전의 유치권에 관한 연구 - 개정 담보법(2006)의 내용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제49-2호(한국민사법학회, 2010), pp. 49-80; 남효순, “프랑스민법상의 부동산우선특권 - 개정 담보법(2006)의 내용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제49-2호

1. 자동차질권의 연혁

자동차등록질권이 프랑스민법전에 규율되기까지의 입법적 연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민법은 전통적으로 동산에 대하여는 질권의 설정만을 인정하고, 또 질권의 설정을 위해서는 점유이전(개정전 프랑스민법전 제2076조)을 요구하였다.³⁾ 그런데 동산에 대한 점유이전은 많은 불편을 야기하였으므로, 실제 거래에서는 점유이전을 회피하기 위하여 질권이 아닌 양도담보(*cession fiduciaire*)를 많이 이용하였다. 그 후 프랑스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동산에 대하여 한편으로 저당권을 인정하고 다른 한편으로 질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동산의 점유이전에 대신하여 동산이 소재하는 장소를 고정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우선 프랑스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하천선박저당(운송법전 제L.4112-1조 이하),⁴⁾ 해상선박저당(운송법전 제L.5114-1조 이하)과 항공저당(운송법전 제L.6122-1조 이하)을 인정하였다. 이들 동산저당은 상사저당에만 인정되었는데, 이는 현재에도 마찬가지이다. 또 프랑스는 특별법으로 동산에 대하여 등록질을 허용하였다. 우선 1934년 12월 29일자 말랭그르(*Malingre*)법률은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질을 허용하였다. 이는 종전과 달리 점유이전을 실질적(*effective*)인 것이 아닌 의제적(*fictive*) 것으로 완화하고 또 의제적 점유에도 점유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실질적 점유의 효력을 축소하게 되었다. 그 후 자동차등록질을 허용한 말랭그르법률은 1953년 12월 30일자 제 53-968호 테크레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1953년 테크레는 말랭그르법률의 자동차질권에 관한 중요한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였다.⁵⁾ 한편 1951년 1월 18일자 법률은 생산수단·생산설비질(*gage d'outillage ou du matériel d'équipement*)을 허용하였다. 이 법률은 나중에 프랑스상법전(제L.525-1조 내지 제L.525-20조)으로 대체되었다.

(한국민사법학회, 2010), pp. 149-241; 박수곤, “프랑스민법상의 저당권의 효력개관 - 개정 담보법(2006)의 내용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제49-2호(한국민사법학회, 2010), pp. 241-272; 여하운, “프랑스민법상의 유체동산 질권(*gage*)에 관하여”, *민사법학*, 제58호(한국민사법학회, 2012), pp. 109-144; 이은희, “프랑스법의 저당권부 종신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연구 - 2006년 담보법개정에 따른 프랑스소비법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제49-2호(한국민사법학회, 2010), pp. 321-350; 이준형, “프랑스민법전 담보법개정(2006년)의 기본방침과 개요 - 그리말디보고서를 중심으로 -”, *민사법학*, 제49-2호(한국민사법학회, 2010)를 참조하라.

3) 이하 II.에서 법률명 없이 인용되는 조문은 프랑스민법전의 조문을 가리킨다.

4) 운송법전의 명칭은 *Code des transports*이다.

5) J. Mester, E. Putman et M. Billau, *Traité de droit civil, Droit spécial, Des sûretés réelles* (1996, L.G.D.G.), n° 874, p. 310; Ph. Simler et Ph. Delebecque, *Droit civil, les sûretés, la publicité foncière*, 6^e éd. (2012, Dalloz), n° 707, p. 639.

(1) 자동차등록질권에 관한 1934년 12월 29일자 말랭그르(Malingre)법률과 1953년 12월 30일자 테크레

자동차는 소유자가 거주하는 道の 도지사에게 운행신고(déclaration de mise en circulation)와 등록(immatriculation)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 운행 중에는 행정관청이 교부하는 자동차등록증(récepissé 또는 carte grise)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 이 등록절차는 행정절차로서 이 등록증에 소유권원이 표창되는 것은 아니다.⁶⁾ 행정절차를 마친 자동차에 대하여서만 자동차등록질권이 인정될 수 있었다.⁷⁾

자동차등록질권은 1934년 12월 29일자 말랭그르법률(나중에는 1953년 12월 30일자 테크레)에 의하여 자동차매수인의 무자력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도인과 자동차매입을 위하여 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자동차등록질권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정질권이 아니라 약정질권에 해당한다. 동법률은 실질적 점유의 이전이 없는 자동차등록질권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한 도지사는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원부(registre spécial à souche)를 비치하고, 채권자의 자동차에 대한 질권의 신고를 받아서 질권을 등재하도록 하였다(1953년 12월 30일자 테크레 제2조 제1항). 이 질권신고의 등재는 자동차등록질권의 성립요건 또는 효력요건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질권의 대항요건에 해당할 뿐이었다.⁸⁾ 그리고 도지사는 새로 교부하는 자동차등록증에 자동차등록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자동차등록질권은 5년의 기간 내에서만 유효하고, 그 기간 전에 다시 5년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1953년 12월 30일자 테크레 제2조 제4항). 도지사는 질권자에게 신고수리증(reçu de la déclaration)을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수령한 질권자는 자동차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았다(1953년 12월 30일자 테크레 제2조 제3항). 신고수리증을 소지하는 자동차등록질권자에게는 의제적 점유가 인정되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의제적 점유에 대하여 질권자에게 유치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프랑스민법전의 규율

프랑스민법전은 2006년 3월 23일자 오르도낭스에 의하여 질권설정자로부터 질

⁶⁾ J. M. Cabrillac, Ch. Mouly, S. Cabrillac et Ph. Pétel, *Droit des sûretés*, 8^e éd. (Litec, 2007), n° 789, p. 545.

⁷⁾ M. Bourassin, V. Brémond et M.-N. Jobard-Bachelier, *Droit des sûretés*, 2^e éd. (Sirey, 2010), n° 1730, p. 458.

⁸⁾ M. Bourassin, V. Brémond et M.-N. Jobard-Bachelier, *op. cit.*, n° 1733, p. 459.

물에 대한 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지 않고도 질권을 설정하는 길을 열었다. 즉, 질권의 대항요건으로 질물에 대한 점유이전과 등록의 두 가지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제2337조). 달리 말하면 프랑스민법전은 질권을 규정하면서 두 가지의 대항요건을 인정하고, 이 두 경우를 일반적 질권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종전의 1953년 12월 30일자 테크레는 자동차에 대하여만 그리고 신용매도인이나 대출금융기관과 같은 일정한 채권자에 한해서만 등록질을 인정하였지만, 이제는 질물 일반에 대하여 그리고 일반 채권자를 위하여 등록질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요컨대 등록질권이 점유질과 함께 질권의 하나의 모습으로 인정된 것이다.⁹⁾ 한편 프랑스민법전상으로도 특수한 질권(*gage spéciale*)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동차등록질권이다. 이 자동차등록질권은 프랑스민법전(제2절 제2351조 내지 제2353조)이 1953년 12월 30일자 테크레의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¹⁰⁾ 1953년 12월 30일자 테크레의 3개 조문만 프랑스민법전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이들이 법률에 해당하는 규정이기 때문이고, 나머지 명령에 해당하는 규정은 참사원의 “2006년 12월 23일자 제2006-1804호 비점유질권의 공시에 관한 민법전 제2338조의 적용에 관한 테크레(Décret n° 2006-1804 du 23 décembre 2006 pris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2338 du Code civil et relatif à la publicité du gage sans dépossession)”로 들어와 존속하게 되었다.¹¹⁾ 2006년 12월 23일자 제2006-1804호 테크레는 질권의 공시에 관한 테크레가 이에 해당한다.¹²⁾ 프랑스민법전 제2338조에 의하면 “질권은 특별등록부에 기재됨으로써 공시된다. 등록방법은 참사원의 테크레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¹³⁾

9) L. Aynès et P. Crocq, *Les sûretés. La publicité foncière*, 2^e éd. (Defrénois, 2006), n° 517, p. 248.

10) 프랑스민법전 제4권 담보, 제2편 담보물권(또는 물적담보), 제2부편 동산담보물권, 제2장은 유체동산질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장 제1절은 질권 일반법(Section 1 : Du droit commun du gage)을 그리고 제2절은 원동기장치차를 목적물로 하는 질권(Section 2 : Du gage portant sur un véhicule automobile)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1) M. Bourassin, V. Brémond et M.-N. Jobard-Bachelier, *op. cit.*, pp. 461-2.

12) 2006년 12월 23일자 제2006-1804호 테크레는 등록의 절차(제1절), 변경절차(제2절), 등록의 효력(제3절), 등록의 말소(제4절), 전자색인(제5절), 서기관의 의무(제6절), 항고절차(제7절) 및 기타 규정(제8절) 총 22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13) **Art. 2338 du Code civil français** Le gage est publié par une inscription sur un registre spécial dont les modalités sont régl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2. 자동차등록질권의 설정

자동차등록질권에 대하여는 오래전부터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질이 설정되는 경우는 드물었고 이는 현재에도 마찬가지이다. 그 원인은 첫째, 자동차의 매도인은 질권을 설정하는 대신 채무자의 월급이 지급되는 장소를 지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할부금을 선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prélèvement d'office).¹⁴⁾ 둘째, 채무자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하여 매도인은 신고 압류를 하여 자동차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 신고압류는 1991년 7월 9일자 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프랑스민사집행절차법전이 인정하였다. 신고압류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압류절차에 지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소유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담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¹⁵⁾ 셋째, 많은 경우 소유권유보조항을 매매계약에 삽입하여 자동차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하기 때문이다.¹⁶⁾

자동차등록질권이 프랑스민법전으로 들어오고 질권의 일반법리에 따르게 되면서, 자동차등록질권의 설정도 몇 가지 점을 제외하고는 질권 일반의 규율을 받게 되었다. 우선 질권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다. 1953년 12월 30일자 데크레의 경우는 자동차 신용매도인과 금융기관의 대출자만 질권자가 될 수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질권자는 이들에 한하지 않는다. 또 질권설정의 합의는 피담보채무와 자동차를 적시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고,¹⁷⁾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된다(제2336조).¹⁸⁾ 달리 말하면 자동차 질권의 설정도 질권 일반의 경우와 같이 요식행위가 된 것이다.¹⁹⁾

(1) 대항요건인 행정관청에의 신고

자동차등록질권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2351조). 프랑스민법전은 질권 일반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점유이전(제2337조 제2항) 또는 등록(제2337조 제1항)을 요구하고 있다.²⁰⁾ 동일한 질물에 대하여 점유이전과 등록이 된 경우 등록을 우선시키고

14) Ph. Simler et Ph. Delebecque, *op. cit.*, n° 707, p. 639.

15) III. 자동차등록질권의 집행절차를 참조.

16) J. Mester, E. Putman et M. Billau, *op. cit.*, n° 875, p. 311.

17) 다만, 공정증서일 필요는 없다.

18) 질권의 설정에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2006년 담보법 개혁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19) 여하운, “프랑스민법상의 유체동산 질권(gage)에 관하여”, **민사법학**, 제58호(한국민사법학회, 2012), p. 115.

20) *publicité*란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한 공시를 말한다. 또 *publicité*가 등기 또는 등록 그 자체를 의미할 때도 있다. *publicité*가 부동산등기소에서 관할하는 경우에는 ‘등기’로, 기

있다(제2340조 제2항). 그렇다면 자동차등록질권의 경우에도 질권 일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항요건을 질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자동차등록질권의 경우에는 1934년 12월 29일자 말랭그르법률에 의하여 일반 질권과는 별개로 규율되었고 또 그 후속 법률인 1953년 데크레가 프랑스민법전(제2351조 내지 제2353조)으로 수용되었다는 연혁에 비추어 볼 때, 질권자는 대항요건으로 점유이전의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다. 다만, 프랑스민법전(제2351조)이 자동차등록질권의 대항요건으로 행정관청에의 신고를 요구하고 있는 점이 일반 질권의 경우 질권등록부(registre des gages)에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것이다. 도지사는 자동차등록질권의 대항요건을 위하여 특별등록원부(registre spécial à souche)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²¹⁾

(2) 자동차에 대한 점유

자동차등록질권의 경우에 자동차를 점유하는 자는 채무자이다. 그런데 자동차등록질권의 경우는 1934년 12월 29일자 법률(제2조 제3항)에서부터 프랑스민법전(제2352조)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질권자가 신고수리증을 교부받는 경우 점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 점유(possession effective)가 아니라 의제적 점유(possession fictive)에 해당한다.²²⁾ 이 경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의제적 점유를 근거로 자동차등록질권자에게 유치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3. 자동차등록질권의 효력과 실행

자동차등록질권에 관한 1953년 12월 30일자 데크레의 규정이 프랑스민법전으로 들어오면서, 자동차등록질권의 실행은 특별한 효력을 제외하고는 질권 일반의 규율을 받는다(제2353조). 따라서 피담보채무권의 변제가 없을 경우 질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갖는다(제2333조). 질권자는 법원에 청구하여 질물의 매각을 명하게 할 수 있다(제2346조). 또 질권자에게는 직접변제충당권이 인정된다(제2347조). 그리고 질권자는 질물에 대하여 질권설정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계약법상의 권리를 갖는다. 유질계약(제2347조)상의 권리가 그러하다.

다 기관에서 관할하는 경우에는 ‘등록’이라고 번역하기로 한다. 자동차의 경우 공시는 행정관청에 하는 것이므로 ‘등록’이라고 번역하기로 한다.

21) J. M. Cabrillac, Ch. Mouly, S. Cabrillac et Ph. Pétel, *op. cit.*, n° 791, p. 547.

22) 그 밖에 의제적 점유가 인정되는 것은 영업창고질권의 경우이다.

(1) 유치권

일반 질권의 경우 대항요건으로 질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질권자는 질물에 대하여 유치권(droit de rétention)을 갖는다. 그리고 등록에 의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한 질권자는 원칙적으로 유치권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제로 질물을 점유하는 자에게는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자동차등록질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고 신고증을 교부받는 경우 의제적 점유가 인정되어 점유권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 의제적 점유에 기초하여 자동차질권자에게 유치권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의제적 점유만으로 자동차등록질권자는 유치권을 갖는다고 판시하고 있다.²³⁾ 한편 자동차등록질권자는 유치권을 자동차등록질권에 우선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다.²⁴⁾ 그리하여 판례는 이 유치권에 의하여 질권자는 국세우선특권에도²⁵⁾ 또 임금우선특권에도²⁶⁾ 앞선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자동차등록질권자는 자동차를 매각한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역시 우선권이 인정된다. 물론 이 경우 자동차등록질권자에게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다른 채권자가 질물의 매각에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스스로 매각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왜냐하면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질권자는 유치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²⁷⁾ 자동차등록질권자의 유치권은 채무자회생절차(또는 도산절차)(procédures collectives)상 담보물권자에게 인정되는 제한도 받지 않는다.²⁸⁾ 다만, 판례는 의제적 점유에 의한 유치권은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판례에 의하면 자동차를 수리하여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정비업체가 유치권자로 보호를 받는다.²⁹⁾ 또 행정기관이 몰수를 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인정된다.³⁰⁾

23) Com., 15. janv. 1957, *Bull. civ.* III, n° 20, 21 et 22 D. 1957. 267, note Hémar.

24) P. Crocq, "Gage", *Répertoire de droit civil* (2007, Dalloz), n° 105, p. 26.

25) Civ., 2° civ. 27 juin 1958, *JCP.* 1958. II. 10819; Com., 15. janv. 1957, *Bull. civ.* III, n° 20, 21 et 22 D. 1957. 267, note Hémar.

26) Com., 15. oct. 1991, *Bull. civ.* IV, n° 288.

27) M. Bourassin, V. Brémond et M.-N. Jobard-Bachelier, *op. cit.*, n° 1736, p. 460; J. M. Cabrillac, Ch. Mouly, S. Cabrillac et Ph. Pétel, *op. cit.*, n° 793, p. 548; P. Crocq, *op. cit.*, n° 106, p. 26.

28) P. Crocq, *op. cit.*, n° 107, p. 27.

29) Com., 11. juin 1969, *Bull. civ.* IV, n° 221.

30) Com., 28. mars 1968, *Gaz. Pal.* 1968, 2, 168.

(2) 매각권

질권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실행하는 질물의 매각절차는 민사집행절차법전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질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질물의 강제매각을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자가 질물을 점유하고 있거나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질물을 인도하면 압류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³¹⁾ 반대로 질권자가 질물을 점유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가 질물을 자발적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압류 및 인도’(saisie-appréhension)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집행권원이 없는 질권자는 법원에 신청하여 질물의 인도 또는 반환하는 명령(ordonnance)에 의하여 질물을 인도받아야 한다(민사집행절차법전 제L.222-1조, 제R.222-11조 내지 제R.222-16조). 집행관은 이 명령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인도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인도조서는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 그 이후 질권자는 매각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자동차등록질권자는 자동차를 의제적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에 있어서는 점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동차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가 자동차의 인도를 거절할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압류 및 인도’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압류 및 인도’의 절차에 따라 자동차질권자가 자동차를 점유한 후에 매각절차를 실행하여야 한다.

2006년의 담보물권법의 개혁이 있기 전에는 자동차등록질권의 경우 우선변제권의 행사는 상법전 제L.521-3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1953년 12월 30일자 데크레 제3조). 상법전 제L.521-3조에 따르면 질권부채권자는 피담보채권이 기한이 도래하면 8일 이내에 법원의 허가 없이도 자동차의 강제경매(*la vente forcée aux enchères publiques*)를 채무자에게 통지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질권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강제매각을 실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91년 7월 9일자 법률에 의하여 새롭게 개정된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압류채권자는 질물에 대하여 1개월 내에는 임의매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강제매각의 절차에 따라 강제경매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절차법전 제R.221-30조 제1항). 즉, 임의매각이 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강제경매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질권의 경우 어느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가 문제였다. 우선 1991년 7월 9일자 법률에 의한 민사집행절차법전의 개정에 의하여 상법전이 폐기되었다는 견해가 있었다.³²⁾ 판례는 자동

31) P. Crocq, *op. cit.*, n° 70, p. 19.

32) Ph. Simler et Ph. Delebecque, *op. cit.*, n° 710, p. 643; L. Aynès et P. Crocq, *op. cit.*, n° 520, p. 251.

차등등록질권이 문제된 사안에서 후자의 견해를 따랐다.³³⁾ 한편 이 문제는 상법전(제L.525-1조 내지 제L.525-16조)에 규율되고 있는 생산수단·생산설비질권의 경우에 상법전 제L.525-3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까지 판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³⁴⁾ 그러나 생산수단·생산설비질권의 경우에는 민법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³⁵⁾ 2006년의 담보물권법의 개혁에 의하여 위의 문제에 대하여 명시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었다.³⁶⁾ 자동차등록질권에 관한 1953년 12월 30일자 데크레의 규정이 프랑스민법전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프랑스민법전(제2353조)은 “질권의 실행은 채무자의 신분을 불문하고 제2346조 내지 제2348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민법전은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신청하여 질물의 매각을 명하게 할 수 있고, 이 매각은 질권설정약정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민사집행절차에 규정되어 있는 방식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46조). 즉, 임의매각 후에 강제경매가 실행되는 것이다. 한편 여기서 “채무자의 신분을 불문하고”라는 것은 한편으로 자동차신용매도인 또는 대출기관임을 불문하고 그리고 질권자가 상사질권자이든 민사질권자이든 불문한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질물의 매각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는 예외의 경우가 존재한다. 상사질권 또는 대출기관의 질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없이도 강제매각을 실행할 수 있다(제2354조). 또 이 경우 민사질권의 경우와 달리 질물에 대한 임의매각이 인정되지 않고 강제매각만 인정된다(프랑스상법전 제L.521-3조). 예를 들면, 영업창고질권(warrants des magasins généraux)(프랑스상법전 제322-4조)과 상사질권(프랑스상법전 제L.521-3조)의 경우가 그러하다. 프랑스상법전 제L.521-3조는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없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8일이 경과하면 질물을 공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직접변제

질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질물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제2347조 제1항). 이 경우 질물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의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채무자에게 반환

33) Com., 5. mai 1995, *Bull. civ.* IV, n° 4.

34) P. Crocq, *op. cit.*, n° 78, p. 21.

35) F.-J. Pansier, “Saisie des véhicules terrestre à moteur”, *Répertoire de procédure civile* (2012), n° 40, p. 16.

36) P. Crocq, *op. cit.*, n° 77, p. 20.

하거나 다른 질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탁한다(제2347조 제2항). 질권자의 직접변제충당권은 다른 우선순위의 담보물권자가 있을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³⁷⁾

(4) 유질계약

개정전 프랑스민법전 제2078조는 유질계약(*pacte comissoire*)을 금지하였다. 이 금지는 공서양속에 속한다고 보았다. 유질계약의 약정이 있으면 이 계약이 질권계약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질계약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가 된다.³⁸⁾ 한편 질권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상대적 무효화가 인정되므로,³⁹⁾ 질권자만이 무효화를 주장할 수 있다.⁴⁰⁾

프랑스민법전은 2006년의 담보물권법의 개혁으로 유질계약을 허용하였다(제2347조). 질권설정 당시 또는 사후에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없으면 채권자가 질물의 소유자가 된다고 합의할 수 있다(제2347조 제1항). 질물의 가액은 화폐금융법전이 정하는 시장의 공식적인 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전하는 날에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감정인이 정하고, 반대의 약정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제2347조 제2항). 여기서 소유권이 이전하는 날이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문제이다. 기한이 도래하는 날, 이행지체를 가져오는 통지가 만료하는 날, 감정이 실행된 날 중 어느 날을 말하는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는 질권설정계약에서 이를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⁴¹⁾ 질물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의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다른 질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탁한다(제2347조 제3항).

(5) 추급권

질권에는 추급권이 인정되므로 질물이 누구의 소유가 되더라도 질권의 실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3취득자가 질물을 선의취득(제2276조)을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7) M. Bourassin, V. Brémond et M.-N. Jobard-Bachelier, *op. cit.*, n° 1739, p. 461; J. M. Cabrillac, Ch. Mouly, S. Cabrillac et Ph. Pétel, *op. cit.*, n° 794, p. 548; P. Crocq, *op. cit.*, n° 116, p. 29.

38) Cass. 1^{re} civ. 18 mars 1983, *Bull. civ.* I, n° 100.

39) 프랑스민법의 경우 상대적 무효란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주장하여야만 비로소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무효화라고 부른다.

40) Com., 5. oct. 2004, n° 01-00.863, *Bull. civ.* IV, n° 16.

41) P. Crocq, *op. cit.*, n° 138, p. 34.

점유질의 경우 등록이 인정되므로 등록된 질권에 대하여는 제3취득자는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제2337조 제3항). 그런데 자동차등록질권자의 추급권에 대하여는 학설상 논란이 있었다. 질권이 신고된 자동차를 취득한 제3취득자는 취득시에 자동차등록질권의 존재를 모른 경우에는 선의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아니면 선의취득이 배제되어서 자동차등록질권자가 추급권이 인정되는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질권자는 질권이 등록되어 공시되는 순간 비록 의제점유이기는 하지만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선의취득이 배제되고 또 질권의 신고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으므로 추급권이 있다는 견해가 다수설이었다.⁴²⁾ 판례도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⁴³⁾ 따라서 자동차등록질권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제적 점유도 주어지지 않으므로 추급권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⁴⁴⁾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질권자의 추급권의 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매매하거나(소유권유보조항이 있는 경우),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임대하는 행위는 프랑스형법(제314-5조)상의 질물횡령죄(*détournement de gage*)를 구성한다. 이는 질권신고가 미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또 정식으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⁴⁵⁾

III. 프랑스 민사집행절차법전상의 자동차등록질권의 실행절차

프랑스의 민사집행절차법전상 자동차등록질권에 기한 집행은 우선 일반 질권의 실행에 따라 진행된다.⁴⁶⁾ 프랑스민법전에 의하면 자동차등록질권자는 법원에 자동

42) M. Bourassin, V. Brémond et M.-N. Jobard-Bachelier, *op. cit.*, n° 1737, p. 460; J. M. Cabrillac, Ch. Mouly, S. Cabrillac et Ph. Pétel, *op. cit.*, n° 794, p. 549.

43) Com., 12. déc. 1966, *Bull. civ.* III. n° 478.

44) J. M. Cabrillac, Ch. Mouly, S. Cabrillac et Ph. Pétel, *op. cit.*, n° 794, p. 549.

45) Com., 12. déc. 1966, *Bull. civ.* III. n° 478.

46) 프랑스의 민사절차에 관한 법전으로 민사절차법전(*Code des procédures civiles*)과 민사집행절차법전(*Code des procédures civiles d'exécution*)이 있다. 전자가 우리의 민사소송법에 해당하고 후자가 민사집행법에 해당한다. 민사집행절차법전은 2012년 6월 1일자로 제정되었다. 이 법전은 민사집행절차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인 명령을 모두 모아 하나의 법전으로 편찬한 것이다. 이 법전은 법률부분(*Partie législative*)과 명령부분(*Partie réglementaire*)으로 나누어지는데, 법률부분의 조문은 '제L.000조', 명령부분의 조문은 '제R.000조'로 표시한다. 여기서 L.은 법률(*loi*)의 약어이고, R.은 명령·시행령(*règlement*)의 약어이다.

차의 매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매각은 민사집행절차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집행 방식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제2346조 제1항).⁴⁷⁾ 이 집행방식은 자동차등록질권자가 자동차에 대하여 실제로 점유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자동차등록질권자가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을 실행하고, 임의매각이 실행되지 않으면 강제매각을 실행한다. 그러나 자동차등록질권자가 자동차를 의제점유하고 있을 뿐이거나 소유자 이외의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압류 및 인도’의 절차를 실행하여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으로 점유를 확보하고 나서 ‘압류 및 매각’의 절차절차를 실행하게 된다. 한편 기술한 바와 같이, 민사집행절차법전은 자동차의 점유를 확보하고 자동차의 처분을 금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압류절차인 바퀴잠금압류와 신고압류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민사집행절차법전의 특징과 동산의 일반 압류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 후에 특별한 압류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프랑스 민사집행절차법전의 특징

프랑스 민사집행절차법전은 제2권이 동산집행절차(*procédures d'exécution mobilière*)에 대하여 그리고 제3권이 부동산압류(*saisie immobilière*)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경우 동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를 원칙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부동산의 강제집행에는 동산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⁴⁸⁾ 다시 말하면, 동산의 강제집행절차를 원칙적인 절차로 구성하고 부동산의 강제집행절차는 압류와 관련하여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민사집행절차법전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일반 강제집행의 절차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제L.111-3조).⁴⁹⁾

프랑스의 경우 민사집행절차는 강제절차(*procédure d'exécution forcée*)를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 우선 유체동산의 민사집행의 경우 임의매각을 먼저하고, 임의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강제매각을 허용한다(제L.221-3조 제1항). 즉, 유체동산은

47) 이하 III.에서 법률명 없이 인용되는 조문은 프랑스의 민사집행절차법전의 조문이다.

48) N. Fricero, *L'essentiel des procédures civiles d'exécution*, 3^e éd. (Gualino, 2013), p. 120.

49) 우리 민사집행법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관한 편을 따로 두고 있다. 담보권실행경매의 경우 가장 특징인 것은 집행권원을 요구하지 않고 담보권증명서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 밖의 절차적인 면에서 임의경매에는 몇 가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

압류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는 채무자가 임의매각을 진행할 수 있고, 1월이 경과하여도 임의매각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기관에 의하여 공경매장(aux enchères publiques)에서 하는 강제경매가 실행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랑스의 경우 임의집행(exécution volontaire)이란 경매(adjudication)가 아니라 사인 간의 매각이라는 점이다. 한편 부동산의 경우에도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을 경우에는 강제경매에 앞서 임의매각이 실행될 수 있다(제L.322-1조). 부동산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임의매각(vente amiable)은 의사에 의한 매각(vente volontaire)의 효력을 갖는다(제L.322-3조 제1문). 요컨대 프랑스의 경우 동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또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임의매각이 강제경매에 앞선다는 점이다.⁵⁰⁾

2. 프랑스 민사집행절차법전상의 동산의 일반 압류절차

민사집행절차법전은 동산집행의 경우 동산이 유체동산(meuble corporel)이나 무체동산(meuble incorporel)이나에 따라 압류방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유체동산에 대한 일반적 압류절차로서 ‘압류 및 매각’(saisie-vente),⁵¹⁾ ‘압류 및 인도’(saisie-appéhension), ‘압류 및 반환’(saisie-revendication)의 절차가 있다. 금전채권인 무체동산에 대한 압류로는 ‘압류 및 전부’(saisie-attribution) 절차와 그 밖에 보수에 대한 보수압류(saisie des rémunération) 절차가 있다.⁵²⁾ 한편 민사집행절차법전은 일정한 동산에 대한 특별압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특별 동산으로 미분리 과실,

50) 우리 민사집행법의 경우에는 강제경매는 강제집행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

51) 개정 전 프랑스민사집행법에서는 이를 saisie-exécution라고 불렀다.

52) 1991년 민사집행절차법전의 개정에 의하여 압류 및 전부(saisie-arrêt) 절차는 ‘saisie-attribution’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압류 및 전부절차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여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제L.211-1조). 압류채권자는 집행관이 작성하는 문서(acte d’huissier de justice)로 제3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압류가 진행된다(제R.211-1조 제1항). 이 문서에는 법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된다(제R.211-1조 제2항). 집행관문서에는 문서가 통지되는 시간을 적시하여야 한다(제R.211-1조 제3항). 통지는 채무자에게도 집행관문서를 통하여 8일 이내에 실행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제R.211-3조 제1항). 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집행관문서에도 법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된다(제R.211-3조 제2항).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범위를 신고하여야 한다(제L.211-3조). 제3채무자는 현장에 있는 집행관에게 채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증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피압류제3채무자(tiers saisi)는 채무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집행관이 증명서를 제시하면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다(제R.211-6조 제1항). 변제를 받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제R.211-7조 제1항). 지급의 범위에서 변제에 의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게 된다(제R.211-7조 제2항).

자동차, 은행금고유치물이 있다. 이는 종전에 미분리과실에 대하여만 인정되었던 ‘미분리과실의 압류’(saisie-brandon)가 자동차와 은행금고유치물로 확대된 것이다. 이 확대는 1991년 7월 9일자 법률 제91-650호와 1992년 7월 31일자 데크레 제 92-755호에 의하여 개정되었다. 그 밖에 선박과 항공기 등의 집행에 대하여는 별도의 집행절차법전이 마련되어 있다(제L.241-1조). 이상의 점에서 자동차에 대하여 집행이 개시될 경우 유체동산의 일반 압류절차나 또는 특별 압류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 것이다.

3. 프랑스 민사집행절차법전상의 특별 압류절차

민사집행절차법전은 자동차⁵³⁾에 대하여는 두 가지의 특별 압류절차를 인정하고 있다. 민사집행절차법전이 이처럼 자동차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자동차가 갖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⁵⁴⁾ 첫째, 자동차는 이동성으로 인하여 압류를 쉽게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는 소유자의 주소지나 거주지가 아니라 공로에도 주차가 가능하므로 더욱더 그러하다. 또 자동차는 은닉이 아주 쉽다는 것이다. 둘째, 자동차는 일상생활, 근무 또는 여가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자동차는 많은 경우 신용구매나 담보물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그 결과 금융기관이 자동차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하여야 하는 법적 쟁송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점을 고려하여 민사집행절차법전은 자동차에 대하여 특별 압류절차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특별 압류절차는 일반법에 대한 예외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⁵⁾

자동차에 대한 두 가지 특별 압류절차에는 신고압류와 바퀴잠금압류가 있다. 전자는 집행관이 관할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여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절차이다. 즉, 신고압류는 자동차등록증의 신규발급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매매 등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다. 한편 후자는 집행관이 자동차에 대하여 바퀴잠금조치를 취하여 압류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절차이다. 이는 자동차를 물리적으로 이동불능인 상태로 하여 이동성을 없애므로써 채무자가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물리적 절차이다. 이는 자동차에 대한 점유의 확보를 실행하기 위한 압류이다. 이상의 신고압류와 바퀴잠금압류는 모두 자동차 소유자의 권

53) 여기서 자동차란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상용, 산업용, 여행용의 자동차, 트럭을 포함한다.

54) R. Perrot et Ph. Théry, *Procédures civiles d'exécution*, 2^e éd. (Dalloz, 2005), n° 745, p. 663.

55) R. Perrot et Ph. Théry, *op. cit.*, n° 743, p. 662.

능을 일부를 침해하는 절차로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에 해당한다.⁵⁶⁾

(1) 일반 압류절차와 특별 압류절차의 경합

자동차에 대한 특별 압류절차는 일반 유체동산으로서의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 압류절차가 집행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특별 압류절차는 일반법에 대한 예외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⁷⁾ 특별 압류절차는 일반 압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함께 집행될 수 있고 또 일반 압류절차와 독립하여 사전에 개시될 수도 있다(제R.223-17조, 제R.223-10조). 우선 특별 압류절차가 일반 압류절차가 개시된 후에 실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일반 압류절차와 특별 압류절차의 경합이 발생하게 된다.⁵⁸⁾ 신고압류의 경우에는 양 절차가 경합한다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신고압류는 자동차등록증의 신규발급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의 매각에 대한 처분에 대한 장해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경합이란 바퀴잠금압류의 경우에는 바퀴잠금압류의 독자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일반 압류절차가 적용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우선 ‘압류 및 매각’의 절차 중에 바퀴잠금압류가 실행되면 자동차의 바퀴에 잠금장치를 하여 ‘압류 및 매각’ 절차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게 된다. 이 경우 민사집행절차법전은 ‘압류 및 매각’에 따른 것과 같이 집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R.223-7조). 이는 바퀴잠금압류의 절차를 제외하고는 ‘압류 및 매각’의 절차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압류 및 인도’의 절차 중에 바퀴잠금압류가 실행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절차법전은 바퀴잠금압류는 바퀴잠금압류절차에 관한 제R.223-6조, 제R.223-8조, 제R.223-9조, 제R.223-12조 및 제R.223-13조에 따라서만 ‘압류 및 인도’ 절차가 집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R.221-2조). 이 범위에서 ‘압류 및 인도’ 절차가 배제되고 바퀴잠금압류절차가 준수되어 그 독자성이 유지되는 것이다.⁵⁹⁾ 한편 바퀴잠금압류와 신고압류가 일반 압류절차에 앞서 실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바퀴잠금압류가 먼저 실행된 경우 후술하는 바와 같이 바퀴잠금압류의 절차가 실행되는 목적에 따라 후속적으로 ‘압류 및 인도’ 또는 ‘압류 및 매각’의 절차가 실행된다.

⁵⁶⁾ R. Perrot et Ph. Théry, *op. cit.*, n° 743, p. 662.

⁵⁷⁾ *Ibid.*

⁵⁸⁾ M. Donnier et J.-B. Donnier, *Voies d'exécution et procédures de distribution*, 7^e éd., coll. Manuel (Litec, 2003), n° 1655, p. 606.

⁵⁹⁾ F.-J. Pansier, *op. cit.*, n° 33, p. 13.

(2) 바퀴잠금압류

바퀴잠금압류는 집행관이 실행한다. 바퀴잠금압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실행될 수 있는 절차라는 점에서 다른 집행절차와 동일하지만, 자동차의 이동불능이라는 물리적 효과를 가져 오는 점에서 독특한 절차라고 할 것이다. 바퀴잠금압류는 자동차의 이동불능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보전절차(mesure conservatoire)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한편 바퀴잠금압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채권의 변제를 얻기 위하여 또는 권리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또는 질권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절차의 예비단계로서의 성질도 갖는다.⁶⁰⁾

바퀴잠금압류는 자동차에 대하여 즉시 점유를 취득하게 하는 압류이다. 바퀴잠금압류에 의하여 채무자는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바퀴잠금압류에는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즉시 채무를 변제하도록 기능이 있다. 이는 자동차에 대한 채무자의 애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그만큼 집행관의 바퀴잠금압류에 반발하는 채무자의 격렬한 행동도 예상할 수 있다.⁶¹⁾ 한편 바퀴잠금압류에는 자동차를 찾고 또 채무자의 소유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자동차등록증에 의하여 자동차가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더라도 자동차등록증은 단순한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자동차등록증은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아 사전에 양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퀴잠금압류가 갖는 법적 의미는 그 절차가 독자적인 절차로서 집행되느냐 또는 부수적 절차로서 집행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첫째, 전술한 바와 같이 바퀴잠금압류가 ‘압류 및 매각’의 집행절차 중에 부수적으로 집행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를 ‘부수적 바퀴잠금(immobilisation accessoire)’이라고 부른다.⁶²⁾ 집행관은 이 경우 매각절차 중에 바퀴잠금압류를 집행하게 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경우에는 바퀴잠금절차는 ‘압류 및 매각’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제R.223-7조) 또 집행관은 별도로 바퀴잠금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는 이 경우 바퀴잠금압류는 독자적인 압류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⁶³⁾ 어디까지나 바퀴잠금압류는 ‘압류 및 매각’의 절차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일 뿐이고, ‘압류 및 매각’의 절차에 의하여서 발생한 압류의 효력이 더 강화될 뿐이다. 즉, 채무자가 부수적 바퀴

60) M. Donnier et J.-B. Donnier, *op. cit.*, n° 1665, p. 609-10; F.-J. Pansier, *op. cit.*, n° 33, p. 13.

61) F.-J. Pansier, *op. cit.*, n° 31, p. 12.

62) R. Perrot et Ph. Théry, *op. cit.*, n° 746, p. 664.

63) *Ibid.*

잠금에 의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일 뿐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민사집행절차법전 제R.223-7조는 “압류 및 매각절차가 진행된다.”(제R.223-7조)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독자적이냐 부차적이냐에 관계없이 모두를 바퀴잠금압류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 견해도 있다. 민사집행절차법전은 제L.223-2조와 제R.223-6조 내지 제R.223-13조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⁶⁴⁾ 이 논문에서는 후자의 견해를 따르기로 한다. 둘째, 자동차에 대한 사전의 다른 압류절차가 없이 바퀴잠금압류가 집행될 수 있다. 이 경우를 ‘주된 바퀴잠금(immobilisation principale 또는 immobilisation à titre principal)’이라고 부른다.⁶⁵⁾ 예를 들면,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던 집행관이 우연히 자동차가 공공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바로 바퀴잠금압류를 실행하는 경우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경우에는 집행관은 집행절차로서 바퀴잠금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진정한 의미의 압류절차가 집행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제R.223-8조(제2항)은 주된 이동불능의 경우 압류의 효력을 소유자의 보관 하에 또는 수치인에게로 이동된 경우에는 그의 보관 하에 압류의 효력을 가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바퀴잠금압류가 독자적으로 또는 사전적으로 집행되는 경우 바퀴잠금압류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난다.

(가) 바퀴잠금장치

집행관은 집행권원을 구비하여 집행의무를 부담하는 집행관은 자동차가 있는 장소를 불문하고 훼손하지 않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채무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잠금장치를 하여(immobiliser) 압류할 수 있다(제L.223-2조 제1문). 여기서 자동차를 잠금장치한다는 것은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의 바퀴를 잠그는 수단을 바퀴잠금장치(appareil d'utilisation)라고 부른다. 그런데 바퀴잠금장치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바퀴잠금장치가 갖추어야 할 유일한 요건은 자동차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바퀴를 제거하거나, 바람을 빼거나 하는 수단은 바퀴잠금장치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위의 요건만 갖추어지면 집행관은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바퀴잠금장치를 선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집행관의 선택에 달려 있다

⁶⁴⁾ M. Donnier et J.-B. Donnier, *op. cit.*, n° 1665, p. 609.

⁶⁵⁾ R. Perrot et Ph. Théry, *op. cit.*, n° 746, p. 664.

고 할 것이다.⁶⁶⁾ 현재 집행관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장치는 경찰이 자동차의 불법주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또는 자동차계류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치이다. 이 장치는 바퀴에 잠금장치를 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차단하는 장치이다. 이를 흔히 “바퀴족쇄 또는 바퀴잠금장치(sabot de Denver)”라고 부른다.⁶⁷⁾⁶⁸⁾ 이 수단이 다른 어떠한 수단보다도 우선하여 자주 사용되는 것은 그 효율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⁶⁹⁾

한편 법령은 바퀴잠금장치에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으로 집행관의 전화번호를 적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R.223-6조 제1항). 이 표시를 공적 표시(*empreinte officielle*)라고 한다. 이 공인표시가 있음으로 해서 관련자들은 자동차에 대하여 집행관의 조치가 집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바퀴잠금장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문의를 하여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인표시가 갖추어야 할 특징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아레떼(*arrêté*)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R.223-6조 제2항). 그리고 이 경우 사진촬영에 관한 제R.221-12조의 규정이 바퀴잠금압류에도 적용될 수 있다(제R.223-6조 제3항).

(나) 바퀴잠금장소

바퀴잠금압류가 집행되는 장소는 바퀴잠금압류가 독자적인 절차 또는 부수적 절차로 집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바퀴잠금압류가 ‘압류 및 매각’의 절차 중에 부수적으로 실행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바퀴잠금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바퀴잠금압류는 ‘압류 및 매각’의 절차가 실행되는 장소에서 집행되므로 얼마든지 바퀴잠금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⁷⁰⁾ 반대로 바퀴잠금압류가 ‘압류 및 매각’의 절차 중에 부수적으로 실행되므로 매각절차를 실행하는 것으로 족하고 바퀴잠금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⁷¹⁾ 프랑스집행법전이 바퀴잠금압류는 ‘압류 및 매각’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제R.223-7조)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한다. 생각건대

66) M. Donnier et J.-B. Donnier, *op. cit.*, n° 1668, p. 610; R. Perrot et Ph. Théry, *op. cit.*, n° 744, p. 662.

67) R. Perrot et Ph. Théry, *op. cit.*, n° 744, p. 662. 이 장치는 1967년에 고안된 것이다.

68)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는 대신 바퀴에 ‘족쇄’ 또는 ‘잠금장치’를 채운 뒤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면 풀어주는 새로운 단속시스템을 도입,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69) F.-J. Pansier, *op. cit.*, n° 32, p. 12.

70) M. Donnier et J.-B. Donnier, *op. cit.*, n° 1669, p. 610.

71) F.-J. Pansier, *op. cit.*, n° 32, p. 12.

민사집행절차법전 제R.223-7조가 이 경우에도 바퀴잠금압류라고 하고 있고 또 바퀴잠금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면 바퀴잠금압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긍정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동차가 소재하는 채무자의 거소나 채무자를 위하여 점유하는 제3점유자의 거소가 바퀴잠금압류의 집행장소가 되는 것이다. 둘째, 바퀴잠금압류가 독자적으로 실행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바퀴잠금압류가 실행되는 장소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다. 자동차가 소재하는 모든 장소가 바로 집행장소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공로에 있을 경우에는 공로가 바퀴잠금장소가 된다. 바퀴잠금압류는 대부분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⁷²⁾ 이 점이 바로 바퀴잠금압류가 갖는 특징이자 또 혁신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⁷³⁾

한편 바퀴잠금은 자동차를 임치하기 위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도 실행될 수 있다. 첫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현장에서 잠금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집행관은 자동차를 즉시 임치인에게 운반하여야 한다. 운반 자체가 바퀴잠금이라고 볼 수 있다.⁷⁴⁾ 둘째, 현장에서 바퀴잠금이 가능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차고 등에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집행관은 현장에서 자동차의 바퀴를 잠금 후, 48시간 이내에 임치인에게 운반하여야 한다.

(다) 바퀴잠금조서의 작성과 채무자에 대한 통지

바퀴잠금압류의 후속적인 절차로서 바퀴잠금조서(*procès-verbal d'immobilisation*)의 작성과 채무자에 대한 통지(*avis au débiteur*)가 필요한지의 여부는 바퀴잠금압류가 독자적인 절차로서 또는 부수적 절차로서 집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전술한 바와 같이 바퀴잠금압류가 ‘압류 및 매각’의 절차의 집행 중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바퀴잠금은 ‘압류 및 매각’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제R.223-7조). 따라서 집행관은 바퀴잠금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둘째, 자동차에 대한 사전의 다른 압류절차가 없이 바퀴잠금압류가 집행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관은 바퀴잠금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또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바퀴잠금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바퀴잠금압류는 무효가 된다(제R.223-8조 제1항). 첫째, 집행권원을 기재하여야 한다(제R.223-8조 제1항 제1호). 둘째, 자동차가 바퀴잠금이 된 날짜와 시간을 기재

72) R. Perrot et Ph. Théry, *op. cit.*, n° 747, p. 665.

73) M. Donnier et J.-B. Donnier, *op. cit.*, n° 1669, p. 610.

74) *Ibid.*

하여야 한다(제2호). 이는 바퀴잠금압류가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자동차는 이 날부터 소유자가 사실상 점유 하거나 또는 다른 장소에 운반된 경우에는 보관자의 점유 하에 있게 된다.⁷⁵⁾ 셋째, 바퀴잠금이 된 장소의 표시와 필요한 경우 그 보관을 위하여 운반되어 있는 장소(제3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집행관은 자동차가 있는 현장에서 자동차의 바퀴를 잠그거나 또는 다른 장소에 운반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⁷⁶⁾ 이를 통하여 집행관은 자동차의 훼손을 막을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담보적 기능을 채권자에 대하여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⁷⁷⁾ 넷째, 자동차에 대한 간략한 묘사, 특히 등록번호, 마크, 색상, 필요한 경우 외관상의 내용물과 드러난 훼손을 기재하여야 한다(제4호). 다섯째, 채무자의 부재 또는 현장 출석에 대한 기재(제5호)를 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취하여야 한다.

쌍방심리주의 원칙(*principe du contradictoire*)은 프랑스의 절차법을 지배하는 원칙인데, 특히 집행절차법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⁷⁸⁾ 따라서 자동차가 채무자가 현장에 없을 때 바퀴잠금조치가 실행된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필요하다. 채무자가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물론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채무자의 부재중에 바퀴잠금조치가 실행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가 거주하는 장소로 일반 우편(*lettre simple*)으로 바퀴잠금이 된 날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 우편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R.223-9조). 첫째, 자동차가 바퀴잠금이 된 집행권원을 기재하여야 한다(제R.223-9조 제1호). 이는 채무자로 하여금 자동차가 왜 바퀴잠금이 되었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바퀴잠금이 된 장소와 필요한 경우 그 보관을 위하여 운반된 장소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제2호). 이는 채무자에게 바퀴잠금이 된 장소와 보관장소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셋째, 바퀴잠금은 압류의 효력이 있고 공로에서 바퀴잠금이 된 경우에는 바퀴잠금이 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적시된 장소로 운반되기 위하여 이동될 수 있다는 경고를 기재하여야 한다(제3호). 압류의 효력이 있음을 알리는 것은 바퀴잠금압류의 법적 의미를 채무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또 공로에서 바퀴잠금이 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적시된 장소로 이동될 수 있다는 경고는 우선 행정법규상 공로에서의 바퀴잠금이 48시간 이

75) F.-J. Pansier, *op. cit.*, n° 34, p. 13.

76) Civ. 2° 7 juin 2006 n° 04-19,001, *Bull. civ.* II, n° 152, D.

77) F.-J. Pansier, *op. cit.*, n° 33, p. 13.

78) *Ibid.*, p. 14.

내로 제한됨을 알려주고 또 그 이후에는 적시된 곳으로 이동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채무자로 하여금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명확한 글씨로 바퀴잠금 조치에 대한 해제를 하기 위하여 수취인이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집행관에게 문의하거나, 자동차가 바퀴잠금이 된 장소의 서기의 주소와 함께 그 소재지가 명시된 집행법원에 바퀴잠금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기재하여야 한다(제4호). 이는 채무자가 어떠한 권리를 갖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채무자는 집행관에게 문의할 수 있고 집행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⁷⁹⁾

(라) 바퀴잠금의 효력

집행관은 자동차의 바퀴를 잠가서 압류할 수 있다(제L.223-2 제1문). 집행관이 바퀴잠금압류를 하면 자동차는 소유자의 보관 또는 이동이 있는 후에는 임치 받은 자의 보관 하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제R.223-8조 제2항). 채무자는 집행법관에게 자동차의 바퀴잠금장치를 제거하여야만 압류의 효력을 제거할 수 있다(제L.223-2조 제2문). 즉,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또는 해당 자동차가 압류를 할 수 없는 차량임을 증명하여 자동차의 바퀴잠금조치를 제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마) 바퀴잠금압류의 후속절차

바퀴잠금압류는 사전에 독자적으로 실행되는 경우 어떠한 목적으로 집행되었느냐에 따라 다른 후속절차가 따르게 된다. 이 경우 바퀴잠금압류는 다른 압류절차가 집행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채권자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바퀴잠금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금전의 지급을 위하여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 및 매각’의 절차가 실행된다. 둘째, 자동차가 채권의 변제가 아니라 소유자에게 인도되기 위하여 바퀴잠금이 된 경우에는 ‘압류 및 인도’의 절차가 진행된다.⁸⁰⁾ 예를 들면, 자동차를 임차한 자가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 바퀴잠금압류는 ‘압류 및 인도’의 절차로 전환된다.⁸¹⁾ 셋째, 자동차가 질권채권자에게 인도되기 위하여 바퀴잠금이 된 경우이다. 이 경우 자동차를 인도받아 매각을 실행하게 된다. 이 경우 바퀴잠금압류에 이어 ‘압류 및 인도’와 ‘압류 및

⁷⁹⁾ R. Perrot et Ph. Théry, *op. cit.*, n° 750, p. 666.

⁸⁰⁾ 이에 대한 절차는 민사집행절차법전 제R.223-12조를 따른다.

⁸¹⁾ R. Perrot et Ph. Théry, *op. cit.*, n° 753, p. 669.

매각'의 절차가 속개된다.⁸²⁾ 따라서 '압류 및 인도'와 '압류 및 매각'의 절차의 혼합적인 성질을 가지게 된다. 채무자가 자동차를 신용매입한 후 기한 내에 약정 금액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이다. 채권자는 질권을 취득한 금융기관이다. 이 셋째 경우가 바로 자동차등록질권자가 실행하게 되는 '인수 및 매각'의 절차이다.

자동차가 질권채권자에게 인도되기 위하여 바퀴잠금이 된 경우, 집행관은 교부의무를 지는 자에게 바퀴잠금이 된 날부터 늦어도 8일 이내에 일정한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문서는 무효가 된다(제R.223-13조 제1항). 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압류 및 인도'의 절차에 관한 사항과 '압류 및 매각'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다. 우선 문서에는 바퀴잠금조서의 사본이 있어야 한다(제R.223-13조 제1항 제1호). 채무자는 바퀴잠금조서의 사본을 붙여넣어 어떠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이 박탈되었는지를 알게 된다. 이하에서 '압류 및 인도'의 절차와 '압류 및 매각'의 절차의 절차를 살펴본다.

① '압류 및 인도' 절차

문서에는 '압류 및 인도'의 절차를 위한 사항이 기재된다. 8일의 기간 내에 집행관과 자동차의 운송조건을 합의하기 위하여 출석하여야 한다는 명령(injunction)과 함께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차는 그의 비용으로 질권채권자에게 교부될 수 있다는 경고가 포함되어야 한다(제R.223-13조 제1항 제2호). 원래 '압류 및 인도' 절차의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스스로 동산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강제인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제L.222-1조 제1항). 그런데 바퀴잠금이 된 자동차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게 되면, 채무자가 스스로 인도하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바퀴잠금이 된 자동차가 사라지게 되어 애써 한 바퀴잠금압류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수가 있다. 여기서 절충적인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⁸³⁾ 우선 채무자로 하여금 8일의 기간 내에 출석하여 자동차의 운송조건을 집행관과 함께 합의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⁸⁴⁾ 그러나 채무자에게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집행권원에 적시된 자에게 교부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도록 한 것이다. 또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질권에게 인도된 경우 자동차는 질권자의 보관 하에 놓이게

82) *Ibid.*, n° 754, p. 670; M. Donnier et J.-B. Donnier, *op. cit.*, n° 1679, p. 614.

83) R. Perrot et Ph. Théry, *op. cit.*, n° 753, p. 669.

84) injonction이란 법관의 명령을 말한다. 이 점에서 집행관의 명령인 commandement과 구분된다.

된다(제R.223-13조 제2항 제1문).

② ‘압류 및 매각’ 절차

문서에는 ‘압류 및 매각’ 절차를 위한 사항이 기재된다. 첫째, 원본, 비용과 만기 이자의 청구금액의 명확한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제R.223-13조 제1항 제3호). 둘째, 1월의 기간 내에 제R.221-30조 내지 제R.221-32조에 따라 임의매각 할 수 있고 이 기간이 경과할 경우 자동차가 강제매각이 된다는 것을 분명한 글씨로 쓴 경고가 포함되어야 한다(제4호). 이 경우 1월의 기간에는 운송조건을 합의하기 위한 기간인 8일이 당연히 포함된다.⁸⁵⁾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토지관할 선택에 관한 사항이다. 인도의무가 있는 자의 선택에 좇아 자동차가 소재하는 또는 자동차가 바퀴잠금이 실행된 집행법원에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는 기재가 포함되어야 한다(제5호). 이는 자동차의 지역관할과 관련하여 인도의무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자동차등록질권자가 자동차의 점유를 확보한 경우 제R.221-30조 내지 제R.221-32조에 따라 임의매각할 수 있고(제R.223-13조 제1항 제4호) 이 기간이 경과할 경우 제R.221-33조 내지 제R.221-39조에 따라 강제매각을 실행한다(제R.223-13조 제2항 제2문).

매각절차는 임의매각이 먼저 있고 나중에 강제매각이 실행된다. 강제매각은 압류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후에 공경매장에서(*aux enchères publiques*) 이루어지고, 이 1월의 기간 동안 채무자는 법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임의매각을 진행한다(제L.221-3조 제1항). 종전에는 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를 통하여서만 매각이 이루어졌다.⁸⁶⁾ 그러나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강제매각은 임의매각이 있던 후에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되었다. 즉, 압류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는 채무자는 임의매각을 진행할 수 있고, 1월이 경과한 후에는 공경매장에서 강제매각이 실행된다(제L.221-3조 제1항). 이처럼 임의매각이 도입된 것은 우선 채무자로부터 강제적으로 자동차를 빼앗음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경매인의 보수, 수거비용 등 강제경매의 비용이 증가하여 채권의 변제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⁸⁷⁾ 또 임의매각을 실행함으로써 강제경매절차가 복잡하여 매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⁸⁸⁾ 채무자가 임의매각을 함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줄일 수

⁸⁵⁾ F.-J. Pansier, *op. cit.*, n° 40, p. 16.

⁸⁶⁾ R. Perrot et Ph. Théry, *op. cit.*, n° 593, p. 544.

⁸⁷⁾ *Ibid.*

⁸⁸⁾ *Ibid.*

있는 것이다.

임의매각이든 강제매각이든 법에 의하여 매각을 진행할 권한이 있는 매각기관(agent habilité à procéder à la vente)은 압류물의 가액이 압류채권자와 참여채권자의 원금, 이자와 비용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금액에 도달할 때에는 매각절차(les opérations de vente)를 중단하여야 한다(제L.221-4조 제1항). 매각기관은 임의매각의 경우는 채무자이고 강제매각의 경우는 법원부속관리(officier ministériel)이다.⁸⁹⁾ 매각기관은 낙찰대금의 표시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제L.221-4조 제2항).

임의매각이든 강제매각이든 매각대금의 지급되어야 압류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제L.221-3조 제5항). 임의매각의 경우에는 매수인의 제안한 금액이 강제매각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제안한 낙찰대금이 매각대금이 된다.

㉔ 임의매각(vente amiable)

임의매각의 개시: 임의매각은 압류가 있는 날로부터 1월의 기간 동안 임의매각을 실행할 수 있다(제L.221-3조 제1항). 자신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속행 중인 채무자는 국참사원의 데크레가 정하는 요건에 따라 자발적으로 매각을 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제L.221-3조 제2항). 1개월의 기간의 계산은 채무자가 압류문서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제R.221-30조 제1항). 압류물을 보관인의 책임 하에 있어 처분할 수 없으며, 어느 경우에도 압류물은 변제가 있기 전까지는 이동될 수 없다(제R.221-30조 제2항).

임의매각의 실행: 채무자는 매수인을 선택하여 매각대금을 협상할 수 있다. 채무자가 매수인으로부터 매수제안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집행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L.221-3조 제3항 제1문). 이 통지는 문서로써 하여야 하고 이름, 주소, 필요한 경우 제안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기간을 적시하여야 한다(제R.221-31조 제1항). 이제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다시 이 기재사항을 수령증명요구부 등기우편(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으로 압류채권자와 참여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제R.221-31조 제2항). 압류채권자와 참여채권자는 15일의 기간 내에 제안된 매각대금을 승낙하거나 또는 이를 거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제안에 대하여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제R.221-31조 제3항). 채권자들은 매수인이 제시한 금액이 자신들의 채권액을 전부 변제하기에

⁸⁹⁾ 프랑스에서 officier ministériel란 공증인, 집행관처럼 법원공무원이 아니면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역을 말한다. 여기서는 ‘법원부속관리’라고 번역하기로 한다.

충분한 경우에는 당연히 제안된 매각대금을 수용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충분한 매각대금을 수용하여 조기에 변제를 받든지 아니면 강제경매를 실행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제안이 변제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거하여 강제매각을 실행하여야 한다(제L.221-3조 제3항 제2문). 이 경우 채권자는 매각을 거절하는 것이 채무자를 해할 의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L.221-3조 제4항). 채권자가 임의매각을 거절한 경우에는 집행책임자(*personne chargée de l'exécution*)는 공경매장에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압류물의 수거를 실시하여야 한다(제L.221-3조 제3항 제2문).

매각대금의 지급과 임의매각. 매각물의 소유권은 매각대금이 지급되어야 이전된다(제L.221-3조 제5항). 제안된 매각대금은 집행관에게 지급되어야 한다(제R.221-32조 제1항). 채무자에게는 매매의 자유가 있지만 압류물은 여전히 관리인의 책임하에 있는 것이다(제R.221-30조 제2항 제1문).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압류물은 변제가 있기 전에는 이동될 수 없다(제R.221-30조 제2항 제2문). 그러므로 매각물의 권리 이전과 인도는 대금의 지급에 달려 있다(제R.221-32조 제2항). 이 점이 동산의 일반 매매에 있어서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과 다른 점이다. 반대로 매각대금의 지급이 없으면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고 강제매각이 진행된다(제R.221-32조 제3항).

강제매각으로의 전환. 매수인이 없어 임의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R.221-30조에 규정된 기간 즉, 압류문서가 통지된 날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만 강제매각을 진행할 수 있다(제R.221-31조 제4항). 필요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와 참여채권자에게 답변을 하게 하기 위하여 15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R.221-31조 제4항).

㉔ 강제매각(*vente forcée*)

강제매각의 개시. 압류가 있는 날부터 1월의 기간 동안 임의매각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매각(강제경매 또는 경매)이 실행된다(제L.221-3조 제1항, 제R.221-32조 제3항). 그런데 임의매각이 실행되는 경우 채권자에게는 15일의 기간이 주어진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임의매각이 없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강제매각을 진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압류채권자와 참가채권자가 답변을 하기 위하여 주어진 15일의 기간이 연장된 후에만 강제매각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제R.221-

31조 제4항).

강제매각의 장소와 기일: 강제매각은 공경매장에서 실시된다(제L.221-3조 제1항). 공경매장은 두 가지가 있는바, 압류물이 소재하는 장소이거나 또는 매각이 실시되는 사무실 또는 지역적 사정으로 인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경쟁을 제고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로서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가 된다(제R.221-33조 제1항). 매각은 공개시장(marché public)에서 실시된다. 이상의 공경매장이 실시될 장소의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제R.221-33조 제2항). 다만, 채권자의 선택은 경매인(commisaires-priseurs judiciaires)에 관한 1816년 6월 26일자 명령 제3조가 규정하는 요건과 강제매각의 임무를 가진 법원부속관리의 지역관할의 제한을 받는다(제R.221-33조 제3항). 한편 강제매각의 일자와 시간에 대하여는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이는 법원부속관리의 합의하에 압류채권자가 정한다.⁹⁰⁾

강제매각의 공고와 매각물의 검사: 정해진 날에 강제매각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이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절차가 실행되어야 하는데, 강제매각의 공고와 매각물의 검사와 수거이다.⁹¹⁾ 우선 강제매각에 대한 공고는 강제매각이 이루어지는 장소, 일자, 시간과 압류물의 성질을 적시하는 게시물로 실행하여야 한다(제R.221-34조 제1항). 게시물은 압류채무자 거주지 관할 시청, 매각장소에 게시한다(제R.221-34조 제2항 제1문). 이 의무적 공고는 너무 빨라서도 너무 늦어서도 안된다. 그 결과 제R.221-31조 제4항에 정한 기간 즉, 1개월의 기간에 채권자가 답변할 시간의 경과 후에 그리고 매각일로 정한 날부터 최소한 8일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제R.221-34조 제2항 제2문). 이러한 의무적 공고 이외에 매각은 언론을 통해서 공고될 수 있다(제R.221-34조 제3항). 공고절차가 종료된 경우 집행관은 공고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한다(제R.221-34조 제4항). 또 집행관은 공고절차가 종료된 후, 채무자에게 매각일로부터 최소한 1주일 전에 매각이 이루어지는 장소, 일자와 시간을 일반 우편 기타 적정한 모든 수단에 의하여 통지를 하고, 이 사실을 위 제R.221-34조의 증명서에 기재한다(제R.221-35조). 한편 강제매각에 앞서서 매각물에 대한 검사가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매각에 앞서 압류물의 내용과 성질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R.221-36조 제1항). 이 문서에는 부족한 목적물과 훼손된 물건만을 기재한다(제R.221-36조 제1항). 이상의 검사를 실행하는 기관은 법원부속관리이다. 검사를 실행하는 경우 제R.221-12조의 규정이 적용된다(제R.221-35조

⁹⁰⁾ R. Perrot et Ph. Théry, *op. cit.*, n° 598, p. 547.

⁹¹⁾ *Ibid.*, p. 548.

제2항). 즉, 법원부속관리는 필요한 경우 압류물건의 사진을 찍어 보유할 수 있고, 집행법원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다(제R.221-12조).

강제매각기관: 강제매각을 실행할 기관은 법원부속관리이다. 종전에는 강제매각 기관은 집행관이었지만 민사집행절차법전의 개정으로 법원부속관리로 변경되었다. 한편 법원부속관리는 법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압류물을 취급하는 중개인과 함께 강제매각을 실행한다(제R.221-37조). 이 경우 강제매각은 강제매각을 진행할 권한이 있는 법원부속관리와 법이 정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전문중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강제매각과 낙찰: 낙찰(adjudication)은 3번의 호가 이후에 최고액의 제시에 대하여 이루어진다(제R.221-38조 제1문). 낙찰자(adjudicataire)는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제R.221-38조 제2문). 강제매각의 경우에도 임의매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금의 지급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다.⁹²⁾ 많은 경우 법원부속관리인의 책임 하에 낙찰대금의 지급이 유예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권의 이전도 당연히 유예되는 것이다. 한편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압류물은 공경매장에서 재매각된다(제R.221-38조 제3문). 이 경우 낙찰자는 최초의 매각대금과 재매각대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부속관리는 매각서(acte de la vente)를 작성하여, 매각물, 낙찰가액, 낙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제R.221-39조).

(3) 신고압류

신고압류를 행하는 자는 집행관이다. 신고압류자에게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집행권원만 필요하고 집행관에 의한 명령은 필요 없다. 신고압류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주로 이용되는데, 자동차의 인수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자동차의 실제 운행자가 소유자가 아니어서 자동차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한 경우에 이용된다.⁹³⁾ 또 신고압류는 자동차의 매각이 실행되지 않고 또는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용하다.⁹⁴⁾ 신고압류에 의하여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이 교부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거래가 금지된다.⁹⁵⁾ 이러한 점에서 신고압류는 집행절차로서 뿐만 아니라 보전절차와 압력수단의 성질을 갖는다.⁹⁶⁾

⁹²⁾ R. Perrot et Ph. Théry, *op. cit.*, n° 603, p. 550.

⁹³⁾ F.-J. Pansier, *op. cit.*, n° 18, p. 6.

⁹⁴⁾ M. Donnier et J.-B. Donnier, *op. cit.*, n° 1659, p. 608.

⁹⁵⁾ 자동차등록증을 통상적으로 회색카드(*carte grise*)라고 부른다(R. Perrot et Ph. Théry, *op. cit.*, n° 755, p. 671-2).

신고압류는 특정의 자동차에 대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동산집단에 대한 집행할 때 동산집단에 포함된 자동차가 압류 및 매각 또는 압류 및 인도의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다르다.

(가)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

집행권원을 집행할 의무가 있는 집행관은 원동기장치차를 압류할 목적으로 관할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제L.233-1조 제1항).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로서 족하다. 다시 말하면 신고압류는 집행관이 자동차가 있는 장소로 갈 필요도 없고 또 자동차에 대하여 직접 실행될 필요도 없고, 신고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⁹⁷⁾ 신고는 관할행정관청에 대한 통지(signification)에 의하여 실행된다(제R.223-2조 제2항).

관할행정관청이란 자동차가 등록된(immatriculé) 관청을 말하는데(제R.223-4조), 도지사(préfét)가 이에 해당한다. 신고서에는 일정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제R.223-2조 제1항). 종전에는 무효로 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이는 나중에 신설된 것이다. 첫째,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제R.223-2조 제1항 제1호). 둘째, 압류된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마크(제2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셋째, 채권자가 원용하는 집행권원의 기재(제3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신고압류는 집행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다.⁹⁸⁾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신청을 한 집행관에게 자동차의 신용구매에 관한 1953년 9월 30일 제53-968호 테크레 제2조가 정하는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과 자동차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제R.223-1조). 이는 집행관을 통하여 채권자가 자동차의 상황을 파악하여 무익한 압류절차를 회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⁹⁹⁾ 또 행정관청의 의무는 집행법상 협조의무가 발생하는 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¹⁰⁰⁾

⁹⁶⁾ M. Donnier et J.-B. Donnier, *op. cit.*, n° 1659, p. 608.

⁹⁷⁾ *Ibid.*

⁹⁸⁾ M. Donnier et J.-B. Donnier, *op. cit.*, n°1659, p. 608.

⁹⁹⁾ F.-J. Pansier, *op. cit.*, n° 19, p. 6.

¹⁰⁰⁾ *Ibid.*

(나) 채무자에 대한 신고의 통지

신고는 행정관청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절차도 실행되어야 한다(제L.223-1조 제2항).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신고의 압류가 알게 된 경우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¹⁰¹⁾

신고압류의 효력은 신고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신고서 사본(copie de la déclaration)은 8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는 압류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제R.223-3조 제1항). 통지서(acte de signification)에는 제R.223-4조가 정하는 바를 전사(轉寫)하여야 하고,¹⁰²⁾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명확한 글씨로 채무자 소재지의 집행법원에게 제기하여야 함도 명확하게 적시하여야 한다(제R.223-3조 제2항). 또 그 밖에 원본, 비용과 만기이자의 청구금액의 명확한 명세를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제R.223-3조 제2항).

(다) 신고의 효력

채무자에 대하여 신고사실을 통지하면 압류의 모든 효력이 발생한다(제L.1233-1조 제2항).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관할행정관청이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¹⁰³⁾ 자동차의 매수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등록할 수가 없고 따라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거래는 사실상(*de facto*) 불가능하게 된다.¹⁰⁴⁾ 압류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도인의 ‘등록증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대항력(*opposition au transfert du certificat d'immatriculation*)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신고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어떠한 등록증도 채권자나 법관의 명령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교부될 수 없다(제R.223-4조 제1항). 다시 말하면,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의 처분권이 박탈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이상의 신고의 효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동차를 양도하는 이외에는 자동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¹⁰⁵⁾ 또 신고를 실

101) *Ibid.*, n° 23, p. 8,

102) 자동차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등록증의 교부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 신고에 대하여 통지가 있는 날부터는 어떠한 등록증도 새로운 권리자에게 교부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자가 신고압류를 해제하거나 법관의 명령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제R.223-4조 제1항). 신고는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의 발생을 멈추지만, 최초의 신고의 절차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제2항).

103) R. Perrot et Ph. Théry, *op. cit.*, n° 757, p. 672-3.

104) F.-J. Pansier, *op. cit.*, n° 24, p. 9.

행한 채권자는 자동차에 대하여 질권이나 우선특권을 갖지도 않는다. 그리고 신고의 효력은 1953년 9월 30일자 데크레의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등록된 질권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제R.223-5조). 즉, 자동차의 질권자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다.

신고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정확히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법령은 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 제L.223-1조(제2항)는 채무자에 대하여 신고의 통지가 있으면 압류의 모든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행정관청이 새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은 의무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불문하고 발생하여야 할 것이므로 신고된 날부터 발생하게 된다고 본다.¹⁰⁶⁾ 신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제R.223-4조 제2항). 즉, 신고압류는 일시적 효력(*effet temporaire*)을 가질 뿐이다. 그러나 신고의 절차가 갱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제R.223-4조 제2항).

자동차에 대하여 신고압류가 행하여지면 채무자는 채권을 변제할 압박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압류 및 매각’의 절차를 실행하여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또는 바퀴잠금압류를 실행하여 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¹⁰⁷⁾

IV. 우리 법에의 시사점

이상에서 자동차에 대한 프랑스민법에서의 특별한 취급과 민사집행절차법전에서의 특별 압류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민사집행법의 경우에도 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자동차에 대한 점유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바퀴잠금압류와 우리나라의 자동차인도명령에 대하여 살펴본다.

¹⁰⁵⁾ R. Perrot et Ph. Théry, *op. cit.*, n° 757, p. 673.

¹⁰⁶⁾ *Ibid.*; F.-J. Pansier, *op. cit.*, n° 25, p. 9.

¹⁰⁷⁾ M. Donnier et J.-B. Donnier, *op. cit.*, n° 1662, p. 608-9.

1. 프랑스 민사집행절차법전상의 압류절차

프랑스의 경우는 질권을 비롯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집행절차가 민사집행절차법전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프랑스에서는 강제경매와 구분되는 임의경매와 같은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권자는 일반 집행절차를 실행하여야 한다. 질권자는 프랑스민법상 법원에 질물의 매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매각절차는 민사집행절차법전에 따라서 일반 채권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진행된다.

(1) 일반 압류절차

자동차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질권자는 프랑스민법전에 의하여 법원에 질물의 매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매각절차는 민사집행절차법전에 따라서 일반 채권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진행된다. 자동차의 등록질권자는 질물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질권자라는 지위에서 집행권원이 없이도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질권자는 점유자의 지위에서 자동차에 대하여 유체동산의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 및 매각’의 절차를 실행하고, 필요한 경우 자동차에 대하여 처분금지압류도 함께 실행할 수도 있다. 반대로 자동차를 점유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질권자는 ‘압류 및 인도’의 절차를 밟은 후에 자동차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특별 압류절차

자동차등록질권자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절차인 ‘압류 및 매각’ 절차나 ‘압류 및 인도’ 절차에 앞서서 또는 그 실행 중에 바퀴잠금압류와 신고압류를 실행할 수 있다. 바퀴잠금압류가 ‘압류 및 매각’ 절차나 ‘압류 및 인도’ 절차에 앞서서 실행되는 경우 바퀴잠금압류는 ‘압류 및 인도’의 절차를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또 자동차질권자는 자동차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기 위하여 유체동산 일반을 위한 처분금지압류를 실행할 필요가 없이, 신고압류를 통하여 바로 처분금지효를 얻을 수 있다.

2.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상의 자동차인도명령의 특징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집행절차가 민사집행절차법전 제3편에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강제집행과 구분되는 임의경매의 집행절차가 존재한다. 임의경매의 경우에도 자동차의 점유확보를 위하여 자동차인도명령제도가 인정된다.

(1) 자동차인도명령의 특징

자동차에 대한 강제매각이든 임의경매이든 자동차에 대한 점유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제도가 바로 민사집행규칙상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인도명령제도이다. 자동차에 대한 집행절차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자동차등록부상 압류 등록을 하는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고,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보관시킨 뒤에 실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13조). 이 경우 채무자에게 명한 자동차인도명령은 집행권원에 준하여 취급된다.¹⁰⁸⁾ 자동차인도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명령하여야 한다. 한편 금융기관이 자동차의 소유자인 경우 자동차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동차점유이전금지처분 신청과 함께 자동차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상의 경우 집행법원은 집행관에 의하여 자동차의 현실적 점유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자동차인도명령은 일종의 집행을 위한 보전처분으로서 잠정적인 것이므로 자동차의 인도 집행이 있는 후 10일 내에 채권자가 강제매각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경매접수증명원)를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13조 제3항).¹⁰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인도명령은 집행현장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나 채무자, 점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나,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이 가능하다(민사집행규칙 제113조 제5항, 제292조 제3항). 이는 채무자 등이 송달 전에 자동차를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자동차인도명령의 집행에 있어서는 강제매각개시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규칙 제116조), 이 기간이 사실상의 집행기간이 된다.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¹¹⁰⁾

(2) 자동차인도명령의 문제점

자동차인도명령은 집행채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동차는 이동성이 크

108)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II] - 동산·채권집행 - (법원행정처, 2003), p. 90.

109) 전게서, p. 95.

110) 전게서, p. 99.

고 또 은닉의 가능성이 크므로, 소재지의 파악이 쉽지 않다. 또 자동차인도명령을 신청함에 있어서 집행채무자를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유자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어서 채무자의 특정에 따르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첫째, 채무자가 특정되어 그에 대한 자동차인도명령이 있는 경우이다. 자동차인도명령은 자동차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민사집행규칙 제112조에 의한 법 제193조의 준용). 그러나 자동차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집행불능이 되어버린다. 둘째, 제3점유자가 특정되어 그에 대한 자동차인도명령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제3자가 점유권 등을 주장하면 집행불능이 된다. 이는 집행관은 제3자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3. 프랑스의 바퀴잠금압류의 특징과 시사점

프랑스의 자동차에 대한 특별압류절차인 바퀴잠금압류의 특징과 우리 자동차인도명령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바퀴잠금압류의 특징

바퀴잠금압류는 자동차가 채무자의 소유이든 아니든 또는 점유자가 채무자이든 또는 제3자이든 누구에 대해서나 실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바퀴잠금압류는 채무자 불특정의 압류절차라고 볼 수가 있다. 또 바퀴잠금압류는 유체동산 일반에 대한 압류절차에 앞서서 사전에 또는 사후에 실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전에 실행되는 바퀴잠금압류는 자동차의 바퀴잠금이라는 물리적 효과를 발생하게 되고 다른 ‘압류 및 매각’ 절차나 ‘압류 및 인도’ 절차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바퀴잠금압류는 그 후 자동차에 대한 일반 압류절차가 계속되어야 비로소 종국적으로 채권자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2) 프랑스의 바퀴잠금압류의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의 인도명령이 실효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인도명령의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프랑스의 바퀴잠금압류는 처음부터 점유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묻지 않고 실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즉, 프랑스의 바퀴잠금압류는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서도 실행될 수 있다. 또 바퀴잠금압류는 채무자가 자동차에 대하여 실행된 ‘압류 및 매각’ 절차나 ‘압류 및 인도’ 절차의 효력을 면탈하기 위하여 제3자와 공모하여 자동차를 제3자의 점유아래 두는 경우에도 그리고 그것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든 후이든 불문하고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바퀴잠금압류란 채무자불특정의 압류절차라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바퀴잠금압류에는 압류대상자의 주관적 범위의 확장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자동차인도명령의 집행 전에 채무자를 특정 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채무자를 특정하지 않고도 자동차인도명령을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부 록〉

I. Code civil français(프랑스민법전)

Livre IV : Des sûretés

제4권 담보

Titre II : Des sûretés réelles

제2편 담보물권

Sous-titre II : Des sûretés sur les meubles

제2부편 동산담보물권

Chapitre II : Du gage de meubles corporels

제2장 유체동산의 질권

Section 2 : Du gage portant sur un véhicule automobile

제2절 원동기장치차를 목적물로 하는 질권

Article 2351 Lorsqu'il porte sur un véhicule terrestre à moteur ou une remorque immatriculés, le gage est opposable aux tiers par la déclaration qui en est faite à l'autorité administrative dans l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제2351조 등록되어 있는 육상의 원동기장치차¹¹¹⁾ 또는 피견인차¹¹²⁾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참사원 테크레가 정한 요건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Article 2352 Par la délivrance du reçu de la déclaration, le créancier gagiste sera réputé avoir conservé le bien remis en gage en sa possession.

제2352조 질권채권자는 신고수리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질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rticle 2353 La réalisation du gage est soumise, quelle que soit la qualité du débi-

111) 원문은 véhicule automobile로서 엔진 등의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차를 말한다.

112) 원동기장치차에 연결되어 있는 차로 예를 들어, 견인차에 끌려가도록 달려있는 차를 말한다.

teur, aux règles prévues aux articles 2346 à 2348.

제2353조 질권의 실행은 채무자의 신분을 불문하고 제2346조 내지 제2348조의 규정에 따른다.

II. Code des procédures civiles d'exécution(민사집행절차법전) - Partie législative(법률부분) -

Livre II : Les procédures d'exécution mobilière

제2권 동산집행절차

Titre II : La saisie des biens corporels

제2편 동산의 압류

Chapitre III : Les mesures d'exécution sur les véhicules terrestres à moteur

제3장 원동기장치차의 집행절차

Section 1 : La saisie par déclaration auprès de l'autorité administrative

제1절 행정관청에의 신고에 의한 압류

Article L223-1

L'huissier de justice chargé de l'exécution d'un titre exécutoire peut faire une déclaration aux fins de saisie d'un véhicule terrestre à moteur auprès de l'autorité administrative compétente.

La notification de cette déclaration au débiteur produit tous les effets d'une saisie.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sont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제L.223-1조

- ① 집행권원을 집행할 의무가 있는 집행관은 원동기장치차를 압류할 목적으로 관할행정관청에 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채무자에 대하여 신고의 통지가 있으면 압류의 모든 효력이 발생한다.
- ③ 현 조문의 적용요건은 참사원 데크레에 의하여 정한다.

Section 2 : La saisie par immobilisation du véhicule

제2절 자동차의 바퀴잠금에 의한 압류

Article L223-2

L'huissier de justice chargé de l'exécution muni d'un titre exécutoire peut saisir le véhicule du débiteur en l'immobilisant, en quelque lieu qu'il se trouve, par tout moyen n'entraînant aucune détérioration du véhicule. Le débiteur peut demander au juge la levée de l'immobilisation du véhicule.

제L.223-2조

집행권원을 소지하여 집행의 의무가 있는 집행관은 채무자의 자동차를 그 있는 장소를 불문하고 자동차를 훼손하지 않은 채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바퀴잠금하여 압류할 수 있다. 채무자는 법관에게 자동차의 바퀴잠금조치를 제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Partie réglementaire(명령부분) -

Livre II : Les procédures d'exécution mobilière

제2권 동산집행절차

Titre II : La saisie des biens corporels

제2편 유체동산의 압류

Chapitre III : Les mesures d'exécution sur les véhicules terrestres à moteur

제3장 원동기장치차의 집행절차

Section 1 : La saisie par déclaration auprès de l'autorité administrative

제1절 행정관청의 신고에 의한 압류

Article R223-1

L'autorité administrative communique à l'huissier de justice qui en fait la demande les mentions portées sur le registre prévu à l'article 2 du décret n° 53-968 du 30 septembre 1953 relatif à la vente à crédit des véhicules automobiles ainsi que tous renseignements relatifs aux droits du débiteur sur ce véhicule.

제R.223-1조

행정관청은 신청을 한 집행관에게 자동차의 신용구매에 관한 1953년 9월 30일자 제53-968호 테크레 제2조가 정하는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과 자동차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Article R223-2

La déclaration valant saisie prévue à l'article L. 223-1 contient à peine de nullité :

- 1° Les nom et adresse du débiteur ou, s'il s'agit d'une personne morale, sa dénomination et son siège social ;
- 2° Le numéro d'immatriculation et la marque du véhicule saisi ;
- 3° La mention du titre exécutoire dont se prévaut le créancier.

Cette déclaration est signifiée à l'autorité administrative mentionnée à l'article L. 223-1.

제R.223-2조

① 압류의 효력을 갖는 제L.223-1조에 규정된 신고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된다.

- 1.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무소
- 2. 압류된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마크
- 3. 채권자가 원용하고 있는 집행권원의 기재

② 이 신고는 제L.223-1조에 규정된 행정관청에 통지되어야 한다.

Article R223-3

A peine de caducité, la copie de cette déclaration est signifiée au débiteur dans les huit jours qui suivent.

L'acte de signification reproduit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R. 223-4 et contient le décompte distinct des sommes réclamées, en principal, frais et intérêts échus. Il indique en caractères très apparents que les contestations doivent être portées devant le juge de l'exécution du lieu où demeure le débiteur.

제R.223-3조

① 신고서의 사본은 8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② 통지문에는 제R.223-4조의 규정의 내용을 전사(轉寫)하여야 하고 또 원본, 비용과 만기이자의 청구금액의 명확한 명세를 포함하여야 한다. 통지문에는 명확한 글씨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거주지의 집행법원에게 제기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적시하여야 한다.

Article R223-4

A compter de la signification de la déclaration valant saisie sur le véhicule et valant opposition au transfert du certificat d'immatriculation, aucun certificat d'immatriculation ne peut plus être délivré à un nouveau titulaire sauf mainlevée donnée par le créancier ou ordonnée par le juge.

La déclaration cesse de produire effet à l'expiration d'un délai de deux ans à compter de sa signification, sauf renouvellement opéré dans les formes de la déclaration initiale.

제R.223-4조

- ① 자동차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등록증의 교부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 되는 신고를 통지한 날부터 채권자에 의하여 또는 법관의 명령에 의하여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어떠한 등록증도 새로운 권리자에게 교부될 수 없다.
- ② 신고는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최초의 신고의 절차에 따라 갱신되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Article R223-5

Les effets de la déclaration ne peuvent préjudicier au créancier titulaire d'un gage régulièrement inscrit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décret du 30 septembre 1953 précité.

제R.223-5조

신고의 효력은 1953년 9월 30일자 데크레의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등록된 질권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Section 2 : La saisie par immobilisation du véhicule

제2절 자동차의 바퀴잠금에 의한 압류

Article R223-6

L'appareil utilisé pour immobiliser un véhicul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L. 223-2, indique, de manière très apparente, le numéro de téléphone de l'huissier de justice.

Une empreinte officielle, dont les caractéristiques sont déterminées par arrêté du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figure sur l'appareil.

Il peut être fai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R. 221-12.

제R.223-6조

- ① 제L.223-2조에 따라 자동차의 바퀴잠금을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에는 명확한 방법으로 집행관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공적 표시가 장치에 나타나야 하고, 그 특징은 법무부장관의 아레떼(arrêté)에 의하여 정한다.
- ③ 제R.221-1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Article R223-7

Si le véhicule est immobilisé à l'occasion des opérations d'une saisie-vente pratiquée dans les locaux occupés par le débiteur ou entre les mains d'un tiers qui le détient pour le compte de ce dernier, il est procédé comme en matière de saisie-vente.

제R.223-7조

자동차가, 채무자 또는 채무자를 위하여 소지하는 자가 점유하는 장소에서 실행되는 압류 및 매각의 집행절차 중에 바퀴잠금이 된 경우에는 압류 및 매각 절차가 진행된다.

Article R223-8

Dans les autres cas, l'huissier de justice dresse un procès-verbal d'immobilisation. Cet acte contient à peine de nullité :

- 1° La mention du titre exécutoire en vertu duquel le véhicule a été immobilisé ;
- 2° La date et l'heure de l'immobilisation du véhicule ;
- 3° L'indication du lieu où il a été immobilisé et, le cas échéant, de celui où il a

été transporté pour être mis en dépôt ;

4° La description sommaire du véhicule avec notamment l'indication de son numéro minéralogique, de sa marque, de sa couleur et, éventuellement, de son contenu apparent et de ses détériorations visibles ;

5° La mention de l'absence ou de la présence du débiteur.

L'immobilisation vaut saisie sous la garde du propriétaire du véhicule ou, après son enlèvement, sous la garde de celui qui l'a reçu en dépôt.

제R.223-8조

① 기타의 경우 집행관은 바퀴잠금조서를 작성한다. 바퀴잠금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된다.

1. 자동차가 바퀴잠금이 되는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의 기재
2. 자동차가 바퀴잠금이 된 날짜와 시간
3. 바퀴잠금이 된 장소의 표시와 필요한 경우 그 임치를 위하여 운반된 장소
4. 자동차에 대한 간략한 묘사, 특히 등록번호, 마크, 색상, 필요한 경우 외관상 보이는 내부의 물건과 드러난 훼손
5. 채무자의 부재 또는 현장 출석에 대한 기재

② 바퀴잠금조치는 자동차의 소유자의 보관 또는 그 이동이 있는 후에는 임치 받은 자의 보관하에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

Article R223-9

Si le véhicule a été immobilisé en l'absence du débiteur, l'huissier de justice en informe ce dernier le jour même de l'immobilisation, par lettre simple adressée ou déposée au lieu où il demeure. Cette lettre contient :

- 1° La mention du titre exécutoire en vertu duquel le véhicule a été immobilisé ;
- 2° L'indication du lieu où il a été immobilisé et, le cas échéant, de celui où il a été transporté pour être mis en dépôt ;
- 3° L'avertissement que l'immobilisation vaut saisie et que, si le véhicule a été immobilisé sur la voie publique, il peut être procédé à son enlèvement dans un délai de quarante-huit heures à compter de son immobilisation pour être transporté en un lieu qui est indiqué ;
- 4° La mention, en caractères très apparents, que, pour obtenir une éventuelle main-

levée de l'immobilisation, le destinataire peut soit s'adresser à l'huissier de justice dont le nom, l'adresse et le numéro de téléphone sont indiqués, soit contester la mesure devant le juge de l'exécution du lieu d'immobilisation du véhicule dont le siège est indiqué avec l'adresse du greffe.

제R.223-9조

자동차가 채무자의 부재 중에 바퀴잠금이 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가 거주하는 장소로 우편에 의하여 바퀴잠금이 된 날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우편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동차가 바퀴잠금이 된 집행권원의 기재
2. 바퀴잠금이 된 장소와 필요한 경우 그 입치를 위하여 운반된 장소의 표시
3. 바퀴잠금은 압류의 효력이 있고 공로(公路)에서 바퀴잠금이 된 경우에는 바퀴잠금이 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적시된 장소로 운반되기 위하여 이동될 수 있다는 경고
4. 명확한 글씨로 바퀴잠금조치에 대한 해제를 받기 위하여 수취인이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집행관에게 문의하거나, 자동차가 바퀴잠금이 된 장소의 서기의 주소와 함께 그 소재지가 명시된 집행법원에 바퀴잠금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명확한 글씨로 된 전사

Article R223-10

Si le véhicule a été immobilisé pour obtenir le paiement d'une somme d'argent, l'huissier de justice signifie au débiteur, huit jours au plus tard après l'immobilisation, un commandement de payer qui contient à peine de nullité :

- 1° La copie du procès-verbal d'immobilisation ;
- 2° Un décompte distinct des sommes réclamées, en principal, frais et intérêts échus ainsi que l'indication du taux des intérêts ;
- 3° L'avertissement qu'à défaut de paiement et passé le délai d'un mois pour vendre le véhicule à l'amiabl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R. 221-30 à R. 221-32, celui-ci est vendu aux enchères publiques ;
- 4° L'indication que les contestations sont portées, au choix du débiteur, devant le juge de l'exécution du lieu où il demeure ou du lieu d'immobilisation du véhicule ;

5° La reproduction des articles R. 221-30 à R. 221-32.

제R.223-10조

자동차가 일정액의 금전의 변제를 얻기 위하여 바퀴잠금이 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바퀴잠금이 된 날로부터 늦어도 8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기재하지 않은 명령서는 무효가 된다.

1. 바퀴잠금조서의 사본
2. 원본, 비용과 만기이자의 청구금액의 명확한 명세
3. 변제를 하지 않고 제R.221-30조 내지 제R.221-32조에 따른 임의매각을 할 수 있는 1개월이 경과할 경우 자동차가 강제매각이 된다는 경고
4. 채무자의 선택에 좇아 자동차가 바퀴잠금이 된 장소 또는 채무자가 거주하는 장소의 집행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기재
5. 제R.221-30조 내지 제R.221-32조의 규정의 전사

Article R223-11

Dans le cas prévu à l'article R. 223-10, le véhicule est vendu comme il est dit en matière de saisie-vente.

Lorsqu'un gage a été inscrit sur le véhicule, l'huissier de justice informe le créancier gagiste, selon le cas, des propositions de vente amiable ou de la mise en vente aux enchères publiques.

제R.223-11조

- ① 제R.223-10조의 경우 자동차는 압류 및 매각의 절차의 경우처럼 매각된다.
- ② 자동차에 대하여 질권이 등록된 경우 집행관은 질권채권자에게 경우에 따라 임의매각 또는 강제매각의 제안을 고지하여야 한다.

Article R223-12

Si le véhicule a été immobilisé pour être remis à son propriétaire, l'huissier de justice signifie à la personne tenue de la remise, huit jours au plus tard après l'immobilisation, un acte qui contient à peine de nullité :

- 1° La copie du procès-verbal d'immobilisation ;
- 2° Une injonction d'avoir, dans un délai de huit jours, à se présenter à l'étude de l'huissier de justice pour convenir avec lui des conditions de transport du véhi-

cule avec l'avertissement qu'à défaut il est transporté à ses frais pour être remis à la personne désignée dans le titre ;

- 3° L'indication que les contestations peuvent être portées, au choix de la personne tenue de la remise, devant le juge de l'exécution du lieu où elle demeure ou du lieu d'immobilisation du véhicule.

제R.223-12조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되기 위하여 바퀴잠금이 된 경우, 집행관은 인도의무가 있는 자에게 바퀴잠금이 된 날부터 늦어도 8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문서는 무효가 된다.

1. 바퀴잠금조서의 사본
2. 8일의 기간내에 출석하여 집행관의 조사를 받아 자동차의 운송조건을 합의하라는 명령과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차는 그의 비용으로 집행권원에 적시된 자에게 교부될 수 있다는 경고
3. 교부의무가 있는 자는 선택에 좇아 자동차가 소재하는 장소 또는 자동차가 바퀴잠금이 된 장소의 집행법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의 적시

Article R223-13

Dans le cas particulier où le véhicule a été immobilisé pour être remis à un créancier gagiste, l'huissier de justice signifie à la personne tenue de la remise, huit jours au plus tard après l'immobilisation, un acte qui contient à peine de nullité :

- 1° La copie du procès-verbal d'immobilisation ;
- 2° Une injonction d'avoir, dans un délai de huit jours, à se présenter à l'étude de l'huissier de justice pour convenir avec lui des conditions de transport du véhicule avec l'avertissement qu'à défaut il est transporté à ses frais pour être remis au créancier gagiste ;
- 3° Un décompte distinct des sommes réclamées en principal, frais et intérêts échus ainsi que l'indication du taux des intérêts ;
- 4° L'avertissement, en caractères très apparents, qu'il dispose d'un délai d'un mois pour procéder à la vente amiable du véhicule immobilisé,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R. 221-30 à R. 221-32, et que, passé ce délai, il peut être procédé à sa vente aux enchères publiques ;

5° L'indication que les contestations peuvent être portées, au choix de la personne tenue de la remise, devant le juge de l'exécution du lieu où elle demeure ou du lieu d'immobilisation du véhicule.

Après remise au créancier gagiste, le véhicule est placé sous la garde de ce dernier. A défaut de vente amiable dans le délai prescrit, il est procédé à la vente forcée aux enchères publiqu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our la saisie-vente. Le cas échéant, il est fai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relatives aux incidents de la saisie-vente.

제R.223-13조

① 자동차가 질권채권자에게 인도되기 위하여 바퀴잠금이 된 경우, 집행관은 교부의 의무를 지는 자에게 바퀴잠금이 된 날부터 늦어도 8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기재하지 않은 문서는 무효가 된다.

1. 바퀴잠금조서의 사본
2. 8일의 기간내에 집행관과 자동차의 운송조건을 합의하기 위하여 출석하여야 한다는 명령과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차는 그의 비용으로 질권채권자에게 교부될 수 있다는 경고
3. 원본, 비용과 만기이자의 청구금액의 명확한 명세
4. 1월의 기간 내에 제R.221-30조 내지 제R.221-32조에 따라 임의매각 할 수 있고 이 기간이 경과할 경우 자동차가 강제매각이 된다는 것을 명확한 글씨로 쓴 경고
5. 이의는 교부의무가 있는 자의 선택에 좇아 자동차가 소재하는 또는 자동차가 바퀴잠금이 된 집행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는 적시

② 질권채권자에게 자동차가 인도되면 자동차는 질권자의 보관 하에 놓이게 된다. 규정된 기간내에 임의매각이 없으면 압류 및 매각의 절차의 요건에 따라 강제매각이 실행된다. 필요한 경우 압류 및 매각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투고일 2015. 4. 26	심사완료일 2015. 5. 20	계재확정일 2015. 5. 29
-----------------	-------------------	-------------------

참고문헌

- 곽윤직·김재형, **물권법**(박영사, 2014).
- 김성수, “프랑스 민법전의 독립적 채무보증(garantie autonome)에 관한 연구 - 개정 담보법(2006)의 내용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제49-2호(한국민사법학회, 2010).
- 남궁술, “프랑스민법전의 유치권에 관한 연구 - 개정 담보법(2006)의 내용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제49-2호(한국민사법학회, 2010).
- 남효순, “프랑스민법상의 부동산우선특권 - 개정 담보법(2006)의 내용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제49-2호(한국민사법학회, 2010).
- 민법주해**[VI] 물권(3)(박영사, 1992).
- 박수근, “프랑스민법상의 저당권의 효력개관 - 개정 담보법(2006)의 내용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제49-2호(한국민사법학회, 2010).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II] - 동산·채권집행 - (법원행정처, 2003).
- 송덕수, **물권법**(박영사, 2014).
- 여하윤, “프랑스민법상의 유체동산 질권(gage)에 관하여”, **민사법학**, 제58호(한국민사법학회, 2012).
- 이은희, “프랑스법의 저당권부 종신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연구 - 2006년 담보법 개정에 따른 프랑스소비법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제49-2호(한국민사법학회, 2010).
- 이준형, “프랑스민법전 담보법 개정(2006년)의 기본방침과 개요 - 그리말디보고서를 중심으로 -”, **민사법학**, 제49-2호(한국민사법학회, 2010).
- 주석민법**[VI] 물권(3)(한국사법행정학회, 1998).
- L. Aynès et P. Crocq, *Les sûretés, La publicité foncière*, 2^e éd. (Defrénois, 2006).
- M. Bourassin, V. Brémond et M.-N. Jobard-Bachelier, *Droit des sûretés*, 2^e éd. (Sirey, 2010).
- C. Brenner, *Voies d'exécution*, 5^e éd., coll. Cours (Daloz, 2009).
- J. M. Cabrillac, Ch. Mouly, S. Cabrillac et Ph. Pétel, *Droit des sûretés*, 8^e éd. (Litec, 2007).
- G. Couchez, *Voies d'exécution*, 9^e éd. (Sirey, 2007).
- M. Donnier et J.-B. Donnier, *Voies d'exécution et procédures de distribution*, 7^e éd.,

- coll. Manuel (Litec, 2003).
- N. Fricero, *L'essentiel des procédures civiles d'exécution*, 3^e éd. (Gualino, 2013).
- S. Guichard et T. Moussa, *Droit et pratique des voies d'exécution*, 6^e éd. (Daloz Action, 2009-2010).
- A. Leborgne, *Procédures civiles d'exécution*, 1^{re} éd. (Précis Dalloz, 2009).
- D. Legais, *Sûretés et garanties du crédit*, 7^e éd. (L.G.D.G., 2009).
- Ph. Malaurie et L. Aynès, *Les sûretés, la publicité foncière*, par L. Aynès et P. Crocq (Defrénois, 2012).
- H. L. J. Mazeaud, F. Chabas et V. Ranouil, *Sûretés. Publicité foncière*, t. 3, 1^{er} vol., par Y. Picod, 7^e éd. (Montchrestien, 1999).
- J. Mester, E. Putman et M. Billau, *Traité de droit civil, Droit spécial, Des sûretés réelles* (L.G.D.G., 1996).
- F.-J. Pansier, "Saisie des véhicules terrestre à moteur", *Répertoire de procédure civile* (2012).
- R. Perrot et Ph. Théry, *Procédures civiles d'exécution*, 2^e éd. (Daloz, 2005).
- G. Piette, *Droit des sûretés* (Gualino, 2006).
- P. Crocq, "Gage", *Répertoire de droit civil* (Daloz, 2007).
- J.-B. Seube, *Droit des sûretés*, 3^e éd. (Daloz, 2006).
- Ph. Simler et Ph. Delebecque, *Droit civil, les sûretés, la publicité foncière*, 6^e éd. (Daloz, 2012).
- P. Théry, *Sûretés et publicité foncière*, 2^e éd. (PUF, 1998).

<Résumé>

La constitution et la réalisation du gage du véhicule en droit français

Nam, Hyo-Soon*

En droit français le véhicule automobile fait l'objet du gage. Il était d'abord réglementé par le décret et puis les articles de ce dernier étaient entrés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par l'Ordonnance du 23 mars 2006 réformant le droit de sûreté. Le gage sur véhicule automobile constitue un régime spécial en droit civil. Selon l'article 2351 du Code civil le gage est opposable aux tiers par la déclaration qui en est faite à l'autorité administrative dans l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Il en résulte que la déclaration joue le rôle d'opposabilité à l'égard des tiers. Le gagiste ne possède réellement pas le véhicule automobile. Cependant, par la délivrance du reçu de la déclaration, le créancier gagiste est réputé, par l'article 2352 du Code civil, avoir conservé le bien remis en gage en sa possession. Il s'agit de la possession fictive. Par conséquent il lui est permis le droit de rétention. Pourtant il est primé par celui qui le possède effectivement. D'autre part, le Code des procédures civiles d'exécution ne permet pas la vente aux enchères amiable comme en cas du gage s'il est le cas de tout autre droit réel de sûreté. Le créancier gagiste doit précéder à la saisie de la vente. En ce qui concerne le meuble corporel, la vente amiable précède à la vente forcée alors que s'il s'agit de l'immeuble celle-ci est autorisée par le juge avant celle-là. En outre, le gage sur véhicule automobile fait l'objet de la réglementation spécifique des saisies spéciales. Il s'agit de la saisie par déclaration auprès de l'autorité administrative (saisie par déclaration) et la saisie par immobilisation du véhicule (saisie par immobilisation). La raison pour laquelle ces deux procédures sont nécessaires est que, d'une part, il faut immobiliser tout de suite le véhicule automobile gagé, d'autant plus qu'en raison de sa mobilité ce dernier pourrait

* Professor, College of Law /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échapper aux poursuites, pour l'appéhension immédiate et que, d'autre part, il faut mettre obstacle au transfert du véhicule. En ce qui concerne la saisie par immobilisation du véhicule automobile, celle-ci peut être procédé même avant la saisie de la vente.

Mots-clés: gage du véhicules terrestres, gage sans possession, possession fictive, droit de rétention par la possession fictive, réalisation du gage, saisie par déclaration auprès de l'autorité administrative (saisie par déclaration), saisie par immobilisation du véhicule (saisie par immobilisation)

